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WTO 뉴라운드와 중요 협상의제에 관한 논의
- 주요국의 경비처리원칙
-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포트

-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Ⅲ)

정책흐름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 외

현장을 찾아서

국세행정개혁기획단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知力과 精神力 / 金仁哲
현안분석	6	WTO 뉴리운드와 중요 협상의제에 관한 논의 / 張權鎬
	21	주요국의 경비처리원칙 / 孫元翼
	35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안 / 韓相國
주요국의 조세제도	50	독일의 조세(Ⅲ) / 李明憲
명언산책	58	부와 소득의 불균형
정책토론포트	60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
현장을 찾아서	86	국세행정개혁을 선도하는 국세행정개혁기획단 / 崔秉圭
경제단상	90	소비의 경제학 / 朴相鳳
	92	Y2K 문제와 우리의 교훈 / 金成東
문화기행	95	서원을 찾아서: 조정의 여러 관직을 두루 섭렵한 행정관료의 전형 모당 홍이상 선생을 배향한 하·강·서·원 / 李 濬
정책흐름	100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
	102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개관
	105	1999년도 제2차 IMF정례회의 최종결과
재정통계	113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19	IMF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



知力과 精神力

金仁哲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60 억 인구가 사는 지구촌이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2천년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새 천년의 역사는 역시 전쟁의 역사일지 아니면 화합의 역사일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새 천년을 맞는 한반도에는 여전히 어두운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분단된 남북에서의 통일은 쉽게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적어도 주변 강대국의 전략가들은 남북한 통일이 쉽게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남한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요로울 때라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남한이 선진국으로서 경제강국이 되어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어야 통일한국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고 자본시장을 크게 개방하였다. 그때는 우리도 곧 선진국이 될 것으로 믿었다. 1인당 GNP도 1995년의 1만달러에서 곧 2만달러 그리고 계속해서 3만달러 수준으로 쉽게 올라갈 줄 알았다. 매년 10% 정도 GNP가 실질성장하고 또 10%씩 원화가 상승한다면 7~8년 후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외환위기를 맞았고

IMF에 경제주권을 상실한 후 구조조정이 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실업을 겪었다. 국민의 재산가치도 여름날 수증기처럼 단기간 내에 증발하였다.

본인은 대학에서 경제발전론을 가르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 그것은 지식의 장벽이 아니라 정신력의 장벽이다. 정보 입수와 지식의 습득은 유학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력은 단시일 내에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정신력이란 계층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응집력을 높이는 엘리트의 리더십과 창의적이고 정직한 기업가 정신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건전한 시민정신의 총합을 가리킨다.

새 천년 초기에는 각 나라마다 개방화와 정보화가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시장개방과 정보 입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국가만이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정보 입수가 느리고 지식기반이 약한 개인은 사회에서 낙오되기 쉽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마다 신속한 정보 입수와 지식습득을 위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지식 자체만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따라가는 엘리트 정신, 다수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계몽된 시민정신도 함께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에 게까지 PC의 보급과 인터넷 접속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동네에 사설 PC방들이 여 기저기 생겨나고 있고 PC방마다 청소년들이 꽉 차 있다. 이들은 일찍부터 세계정보채널에 들어가기 위한 컴퓨터 조작 기술과 영문 구사력을 힘써 배우고 있다. 이 들을 지켜보면 든든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는 우려감이 든다.

이들은 어릴적부터 명문대학 입학과 출세를 위해 남 밀어내기식 경쟁행위에 익숙해 있다. 이들은 자라면서 과거에 국가지도자의 허구성을 보았으며 부모세대의 위선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경쟁자를 모두 적으로 여기고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도 사양하지 않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텐데 걱정이 앞선다. 이들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응 집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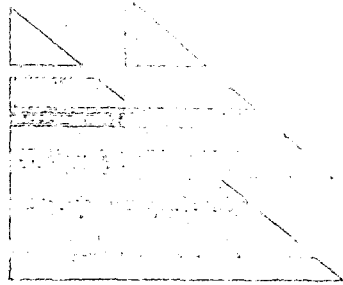
어느 사회든 지식인이 그 사회를 끌어나가고 지배하 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중요한 정보를 남보다 빨리 캐내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자는 그 사회의 각종 프리미엄을 독점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을 예로 든다면 미국사회는 청소년 시절부터 경쟁 속에 고된 훈련을 받는다. 모두들 최고와 최선을 향해 지독한 경쟁 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인종이나 남녀에 차별을 두 지 않는다. 그리고 최고 실력자들과 기술자들은 응분의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사회는 희망과 역동이 넘친다.

또 한편으로 미국에는 사회적 불만과 불신을 적게 만드는 세 가지 정신이 있다. 첫째, 미국사회의 바탕에 는 만인을 평등하게 여기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독교의 박애정신이 깔려 있다. 둘째, 높은 차원의 기업가 정신이다. 미국에서 돈을 번 기업은 대부분 그 수익을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환원한다. 자녀에게 큰 재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많은 자선단체와 공공정책 연구단체에 기증한다. 그래서 기업인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셋째, 시민들의 자원봉사 정신이다. 직업전선에서 은퇴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하며 무료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어릴 때부터 장애자를 위해 봉사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의식과 사회봉사정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지식 자체만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따라가는 엘리트 정신, 다수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계몽된 시민정신도 함께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지식만 있고 정신이 없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신은 있되 지식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KDP**

현안분석



1. WTO 뉴라운드와 중요 협상의제에 관한 논의

張 權 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 주요국의 경비처리원칙

孫 元 翼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3.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안

韓 相 國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WTO 뉴라운드와 중요 협상의제에 관한 논의



張 權 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WTO 뉴라운드의 협상 결과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무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전반과 정부, 법 그리고 제도운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1. WTO 뉴라운드 협상 동향

1. 서론

Uruguay Round에 이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New Round(이하 NR)가 1999년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정식 출범한 바 있다. WTO는 러시아, 대만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외한 13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교역에서 이들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를 상회하여 협상 결과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무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전반과 정부, 법 그리고 제도운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더욱이 조만간 중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으로 있어 WTO체제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경제를 논하기 어렵다.

물론 이번 협상이 농산물에 대한 EU와 미국과의 견해차 그리고 노동 및 투자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 등으로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지만 앞으로의 공식·비공식 협상 결과에 따라 기협상의제인 농산물과 서비스 이외 공산품 시장접근 등 다른 분야로 시장개방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애틀에서 논의되었던 협상분야와 이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협상 결렬에 따른 앞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으로의 통상전략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우선 WTO 사무국이 제시한 각료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NR에서의 주요 논의 대상 분야는 총 9개 부문으로 ①UR협정 이행문제 ②농업 ③서비스 ④공산품 시장접근 ⑤무역과 투자 ⑥무역과 경쟁정책 ⑦정부조달 투명성 ⑧무역원활화 ⑨기타 의제 등이 있고 기타 의제에는 무역과 환경, 수산물 보조금, 원산지협정,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NR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하여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 대우도 주요 고려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1/3의 개도국이 제네바에 상주 대표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가 걸린 사안들 특히, UR협정의 불완전한 이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뉴라운드의 순환을 위하여 우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각료선언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밖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각료선언문이 채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문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제안하도록 규정하며 개도국을 위하여 섬유관련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및 이행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다른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EU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단기간에 합의 가능한 의제를 집중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개도국은 새로운 의제의 발굴보다는 섬유와 반덤핑 등 기존 협정의 이행 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농업과 서비스 협정, 정보기술협정(ITA-II),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에 적극적이며 반덤핑과 보조금 협정, 무역과 투자 및 경쟁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EU 그리고 일본은 대체로 농업과 전자상거래, 수산물 보조금에 소극적이며 반덤핑과 보조금협정, 무역과 투자 및 경쟁정책에 대하여 공략적 자세를 보여 미국과 상이한 입장에 있다. 이 밖에도 EU가 적극적인 환경과 무역 분야는 미국이 소극적이고 개도국 또한 환경기준 설정과 규제가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서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과 무역도 같은 이유로 미국의 적극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불투명하며 개도국의 주된 관심인 섬유협정의 확대는 선진국의 반대로 난항이 예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기초는 상호주의보다는 다자주의이며 최근에는 개방형 경

우리나라와 EU 그리고 일본은 대체로 농업과 전자상거래, 수산물 보조금에 소극적이며 반덤핑과 보조금협정, 무역과 투자 및 경쟁정책에 대하여 공략적 자세를 보여 미국과 상이한 입장에 있다.

**협상결과는
일괄수락방식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협상의
전부를 수용하되,
조기에 타결 가능한
부문은 협상 종료
이전에 채택한다.**

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UR과 비교하여 매우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서비스, 공산품 시장접근,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등에서 전향적 협상전략을 취하고 특히 반덤핑과 투자 및 경쟁정책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바 있다.

각료선언문은 향후 3년간 진행될 분야별 협상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될 의제의 선택 이외에도 각국이 선언문의 한 구절 그리고 한 단어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여 각료회의가 종료될 때까지는 각료선언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였는데 사무국이 마련한 초안에 기초하여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New Round 협상원칙

선언문 초안에 의하면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공산품 협상 등 상기의 6개 분야(④~⑨)에 대한 협상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협상기한은 3년으로 제한하고 다음의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그 중 특히 농산물 및 서비스협상은 UR협상에 따라 NR에서 기설정 의제(BIA)로 되어 있다.

협상결과는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협상의 전부를 수용하되, 조기에 타결 가능한 부문은 협상 종료 이전에 채택한다. 협상의 투명성과 균형 그리고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하여 환경을 고려하고 최빈국과 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가 협상의 중요부문으로 개별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각 회원국은 WTO협정에 따라 특수한 상황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 이외에 왜곡 내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지 않는다(Standstill clause).

협상을 관장하는 기구는 일반이사회가 협상을 총괄하고 개별 협상기구도 기존의 WTO 기구를 활용하거나(다수 개도국) 또는 TNC(Trade Negotiation Committee)를 기존의 WTO 기구와 별도로 설치하여 산하에 협상기구를 조직하여 협상을 전개한다(미국과 EU). 개별 협상기구는 총괄기구의 지도하에 2000년 7월 31일까지 협상일정과 그 내용에 관한 시안을 제출하는 대신 무역과 성장위원회(CTD) 그리고 무역과 환경위원회(CTE)가 자문기구로서 협상 내용과 지속 가능한

성장과와의 합치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 중간단계에서 제4차 각료회의는 협상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정치적 지침을 필요하면 제공하고 협상결과의 채택은 특별 각료회의가 수행하도록 한다.

II. 중요 협상의제

1. 농산물 협상

가. 진척상황

농산물 협상의 기본원칙으로 각료선언문 제1차 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하고도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실질적이며 혁신적인 지원 및 보조의 감축을 수행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과 개선을 피하는 한편 UR 농산물 협정의 서문과 제20조에 제시된 목표와 우려를 함께 고려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Cairns) 그룹은 농산물 협상이 공산품과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도 궁극적으로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WTO 협약과 원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선언문에 명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등은 '실질적이고 혁신적 개혁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농산물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농산물 수출국은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996년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하고 생산과 관계없는 고정보조금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수출보조금의 철폐, 보조금 및 관세의 대폭 삭감, 국영무역제도의 개선,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의 제거를 강조하며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EU는 직접지불제로 전환한 미국에 대응하여 가격지지 축소와 직접지불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개혁안을 확정, 차기협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조기에 쌀을 종량세(종가세 환산 1,100% 세율)로 관세화(tariffication)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연장 노력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삭감, 관세할당 등 시장접근 물량의 증대 및 관리방법, 특별긴급관세제도의 폐지, 관세화 유예 유지 등이 농산물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이다.

농산물 협상에서는
관세할당 운용방식,
우회수출,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된 환경보호,
식량안보의 고려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문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요 쟁점

선언문 초안은 시장접근과 관세인하 그리고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하여 2000년 7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삭감, 관세할당(tariff quota) 등 시장접근 물량의 증대 및 관리방법, 특별긴급관세제도의 폐지, 관세화 유예 유지 등이 주요 예상 쟁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은 농산물의 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세화한 품목도 고율로서 사실상 수입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할당에서의 적용관세, 고관세, 경시관세, 무세화 등을 포함하여 모든 농산물 관세의 대폭 삭감 내지는 공산품 수준으로의 세율 인하를 주장한다. 이들은 관세할당의 증대와 개도국 관련 수출 물량의 증대 및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국영무역 등 수입관리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하고 있고 특별긴급관세제도도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동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 제도를 철폐 내지는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협상에서는 관세할당 운용방식, 우회수출,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된 환경보호, 식량안보의 고려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문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에 있어서는 수출국은 허용되는 보조(Green Box, 부속서 2)의 요건이 너무 느슨하여 가격지지, 투입재 보조금 등 감축대상 보조금을 생산 중립적 소득지원금과 휴경 보상금과 같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 내지는 엄격히 제한하거나 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substantial) 감축을 주장하는 반면, 수입국은 정반대로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신축적 방향으로 요건을 조정하되, 의미 있는(significant) 감축을 주장하였다.

한편 총액기준으로 보조금을 감축하는 현행 방식(AMS)이 특정품목에 보조금을 집중시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한 예로 우리나라 쌀은 감축보조금의 90%를 차지), 품목별 감축방식을 도입하고 감축 폭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제도(Blue Box, 농업협정 제6조 5항 참고)는 과도기적 조치이고 생산 및 무역을 왜곡시키고 사용국가도 소수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등은 직불제도가 농업개혁에 필요한 제도로 간주하여 반대하고 있다.

수출보조 분야에 있어서 수출보조가 농산물 시장을 가장 크게 왜곡시키고 있고, 이와 더불어 수출신용, 수출보험의 정부보장도 농산물교역을 왜곡시키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이들 제도의 철폐를 케언즈 그룹이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공정하고도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교역과 WTO체제의 원칙에 따르는 농산물 교역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UR 농산물 협상 양허 범위내의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협정상의 상계 조치를 자제하도록 되어 있으나(Peace Clause, 협정 제13조), 미국, 캐나다 등은 2004년 이후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EU 등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여 제13조의 연장을 주장한다.

협상기한과 관련하여 2002년에 협상을 완결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2001년 7월 31일(또는 11월 30일)까지 포괄적 양허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협정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이후 연장 여부는 2004년중 협상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출국들이 관세화유예 연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점, 더욱이 일본이 쌀의 조기 관세화를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차기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비록 농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을 감안할 때 농산물 협상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다. 사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말 현재 GDP와 인구 대비 각각 5.7%, 9.7%이며 수출입은 각각 12억달러(0.9%)와 63억 달러(4.4%)에 불과하지만 농어업이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우리나라 통상전략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와 허용보조금(Green Box)의 현상 유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실질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어업 지원제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서비스 분야

가. 논의 배경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서비스 교역이 세계 전체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기준 39%(2조 2천억 달러)로서 그 중 국경간 공급과 상업적 주재에 따른 교역이 서비스 교역의 약 80%를 차

비록 농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을
감안할 때 농산물협상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다.

서비스협상은 그 성격상 투자협정에 가깝고 인력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증제도 등 국내규제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어 상품교역에 대한 GATT협정과 달리 난항이 예상된다.

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가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기준 수출입이 각각 270억, 295억달러로 총 교역의 약 20%에 달하는데 이는 1991년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의 인구 및 GDP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각각 52%, 58%인 데 비해 미국은 각각 74%, 73%이며 일본은 64%, 62%이다.

지난 UR협상으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규범이 채택됨으로써 서비스 교역에 관련된 각종 국내 조치에 대하여 기존의 GATT 협정과 마찬가지로 GATS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뉴라운드에서는 그 동안 미진하였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GATS의 대상 분야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업(법률, 회계, 건축, 의료 등 전문직과 임대, 광고, 컴퓨터 서비스), 통신(유·무선 통신), 건설, 유통(도·소매), 환경(하수 및 폐기물 처리), 금융, 관광, 해운(창고, 통관, 운송 포함), 문화, 교육 등 155개에 달하는 각종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GATS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 소비자 이동, 자본 및 노동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며 이번 협상에서는 양허범위(시장접근), 최혜국 및 내국민대우, 면허와 인허가, 기술과 자격취득 등의 국내규제 및 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정부조달 등에 대한 규범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협상은 그 성격상 투자협정에 가깝고 인력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증제도 등 국내규제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어 상품교역에 대한 GATT협정과 달리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의제이다. 한 예로 선진국이 양허한 서비스 업종의 수도 포괄적이지 못하고(미국 69%, 일본 68%) 상품협정과 달리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면제가 시장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용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의 성격상 명확한 국제규범의 제정이 어렵고(예: 보조금이나 덤핑의 정의) 회계기준과 같이 국내규제나 규범을 상호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자연인의 국경 이동에 대한 저항이 상당하다. 기술적으로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서비스 교역의 형태 변화에 대하여 GATS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서비스 협상에서 장애로 작용한다.

한편 서비스교역은 재화의 교역과 달리 관세가 아닌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가 자유화의 핵심사항이며 동시에 면허, 지불 및 이전, 투자 및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과 과세문제 등 국내규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협상은 금융, 해운, 통신 등 별도의 상당한 조치 없이 자유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인정협정(MRA)과 표준협정(TBT)의 확대 등 투명하고도 상호 인정이 가능한 국내규범과 같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분야별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협정은 상품교역과 달리 시장접근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의 개선까지 협상의제로 논의되는 특성이 있다.

나. 논의 동향

서비스 분야에서 최초의 다자규범인 GATS 협정은 시장개방 수준이 낮고 최혜국 의무와 내국민 대우(NT)의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어 무차별주의 준수 의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각료선언문에서는 다음의 원칙을 명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부문에 대한 추가적 양허와 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지향하고 이와 함께 양자간 또는 다자간 Request/Offer(R/O) 방식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문제와 일괄적인 자유화로 분야별 협상을 보충한다. 또한 최혜국대우 등 면제 범위의 재협상과 함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분류의 개선, 보조금과 Safeguard 그리고 국내규제 등 규범제정과 병행하여 현존하는 GATS의 개정 등을 논의한다.

GATS 제6조 4항은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관련조치가 서비스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무역 이사회 산하 국내규제 및 GATS 규칙 작업반이 필요한 규율을 정립할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각료선언문은 늦어도 2002년까지 이러한 작업을 종료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보로 1998년 5월 채택된 관세 면제를 잠정적으로 연장하고 일반이사회가 전자상거래 관련 작업계획을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 그 결과를 제4차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5월 주요 4개국(Quad)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포함, 모든 서비스 부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확인과 국내규제에 대한 다자간 규율 개발의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EU는 시청각 서비스, 미국은 해운분야에서, 일본은 항공운수분야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반면 개도국은 서비스협정을 투자협정으로 인식,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대신 긴급수입 제한과 자연인 이동의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 당시 양허범위가 78개 업종에 불과하였으나 OECD 가입과 경제위기 이후 129개 업종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하였다(의료, 교육, 뉴스업, 연

서비스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은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가능한 한
최혜국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조기 규범
제정으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기반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것이다.

NR에서 관세협상은
 인허방식과 목표 그리고
 고과세의 철폐문제가
 중요 의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양허의 확대,
 저관세의 무세화,
 투명성, 경사관세,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 대상이다.

안어업, 육우사육·도매업, 전화업 제외). 이에 따라 서비스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은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가능한 한 최혜국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조기 규범제정으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으므로 부분적 시장개방이 빠른 시일내에 경쟁을 촉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개방적인 통상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3. 공산품 시장접근

가. 협상 배경 및 동향

관세인하는 과거 8차례에 걸친 GATT와 WTO 협상에서 핵심적 과제로 논의되어 선진국의 경우 UR협정의 완전 이행시 평균관세율이 약 5%로 인하되고 우리나라는 8.1%의 수입가중 평균 양허세율(농산물 제외)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우 취약산업(섬유·신발 등)에 대하여 고관세와 불투명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개도국의 평균 관세율도 대부분 20%~30%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NR에서 관세협상은 만약 이 부분에서의 협상이 내년에 개시된다면 인허방식과 목표 그리고 고과세의 철폐문제가 중요 의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양허의 확대, 저관세(nuisance tariff)의 무세화, 투명성(종량세 등), 경사관세, 비관세장벽 등이 논의 대상이다. 각료선언문 초안은 교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 비율(x%)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과 개도국 관련 수출 품목의 고관세와 경사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관세율구조의 단순화와 양허세율과 실행세율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협상방식은 formula, Request/Offer 그리고 분야별 방식에서 이들을 선택 내지는 혼용하며 대상세율은 양허세율(부재시에는 협상 개시 이전의 실행세율)로 하며 자발적 자유화를 인정하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중이다. EU는 협상방식에서 tariff band approach를 선호하는 등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수국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임·수산물을 공산품과 별도로 협상하자는 우리나라와 일본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가 포괄성에 상치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는 시애틀에서 이러한 별도 협상안을 포기한 바 있다.

나. 협상내용

우리나라 양허 비율은 화물차, 선박, 일부 의약·나무·유리 제품을 제외한 약 92%로 선진국(99%, 주로 원유제품)에 비하여 낮으나 개도국(7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개방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양허세율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실행세율이 이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 인하가 많지 않는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 관세인하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관세협상이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GATT/WTO체제의 출범으로 공산품 관세가 상당히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세 및 경사관세율로 인하여 시장접근이 저해되고 국제무역의 신장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관세율 인하방식에 따라 각국의 이해가 급변하므로 관세협상에 있어서 어떤 인하방식을 채택할 것인가가 핵심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일괄선형 인하(linear reduction)나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스위스식($Z=aT/a+T$, $a=14$)과 같은 공식 적용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공식적용을 사용하지 Request/Offer와 분야별(ITA) 방식이 혼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섬유제품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하에 고관세 품목의 상당한 인하가 가능한 스위스 방식이 바람직하다.

반면 EU는 모든 제품을 고율, 중간 그리고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군(band)으로 나누고 국가별로는 OECD국가, 비OECD국가, 최빈국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조화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HS 6단위군에서 관세율 차이를 축소하여 관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U의 주장에 대하여 다수 국

우리나라의 경우 양허세율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실행세율이 이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 인하가 많지 않는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인하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관세협상이 유리하다.

〈표 1〉 UR 협상에 따른 양허관세율과 양허범위

(단위 : 개, %)

구 분	관세양허범위			평균양허세율		
	총품목	양허품목	양허범위	기준세율(86.9)	양허세율	인하율
공산품	8,705	7,990	91.8	17.9	8.1(6.2)	54.8
수산물	338	144	42.6	19.9	13.6(14.0)	31.6
합 계	9,043	8,134	90.0	17.9	8.1(8.8)	54.6

주 : HS 10단위 기준으로 세율은 수입가중평균인데 UR협상 이후 자동차와 ITA협상 등을 반영하면 실제 양허 비율은 92%로 증가함(말호안은 1999년 단순평균 실행세율임).

자료 : 재정경제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일부 개도국은 부당한 반덤핑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의 개선을 NR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진척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가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만약 공산품 관세인하가 고관세 인하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주도로 분야별 협상으로 전개된다면 EU방식의 포괄적 인하와 관세구조의 단순화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신축적 자세로서 구체적 이행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riff peak(평균관세율이 3배 이상되는 품목이나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와 고율관세(20% 이상)가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선진국은 전체 수입품목의 3~6%가 그 대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8% 균일 관세율 체제(농수산물 제외)를 유지하고 있어 대상 품목이 0.2% 내외로 매우 미미하므로 고관세의 대폭 인하를 적극 주장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종량세와 복합관세의 종가세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세인하의 폭은 Tokyo협상이나 UR협상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감축(인하폭이 1/3 수준 이상)을 목표로 양허범위를 확대하며 관세율구조와 관련해서는 고관세의 실질적 인하와 경사관세의 완화를 추진하되, 저관세 품목의 무세화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협상관세율은 UR과 마찬가지로 양허세율을 대상으로 하고 비관세장벽 철폐를 포함하며 개도국 제품의 시장접근도 확대되어야 한다.

III. 여타 협상의제

1. 반덤핑과 경쟁정책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반덤핑협정은 과거 선진국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개도국에 의하여 활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990년대 1,860건 발생). 반덤핑제도는 수입 제한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 제한적이고 그 피해가 누적적이고 투자와 생산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일부 개도국은 부당한 반덤핑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의 개선을 NR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반덤핑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WTO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과 협약에 합치되지 않는 적용 그리고 조사개시와 재심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등은 추가적으로 무역과 경쟁정책이 규범화되어 독과점행위가 규제된다면 반덤핑협

정이 필요없거나 경쟁협정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UR 이후 상품교역의 국경간 장벽이 완화되면서 상품이 판매 및 유통되는 국내적 조건 즉, 기업관행, 과점구조, 그리고 각종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국제카르텔과 다국적 기업의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나 합병 그리고 경쟁법의 일방적 역외적용에 따른 국가간 마찰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경쟁법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규범이 제정되면 회원국이 자국의 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하여 동등한 경쟁기회가 보장되는데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외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와 일본은 국제규범이 국내의 기업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미국은 자국 독점금지법의 약화를 가져올 규범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완강한 자세를 취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와 일본은 다자간 투자규범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이지만 미국은 양자협상을 선호하여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무역과 투자

UR협상 결과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이 제정되었으나 동 협정은 비관세장벽 차원에서 무역 제한적인 투자조치를 거론하고 있고 실질적 투자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보호에 대한 포괄적 협정이 아니다. TRIMs은 GATT 3조(내국 민대우)와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위배되는 상품무역 관련 투자조치를 부속서에 다음과 같이 예시하여 금지한다. ① 특정 수준의 국산품 구매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강요하는 규정 ②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과 수출액에 연계하여 제한하는 규정 ③ 수입액을 해당기업의 외화 조달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 ④ 특정 품목이나 일정량의 수출을 강제하는 규정. 한편 OECD에서도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었으나 환경·노동 등 시민단체의 반대로 1998년 12월 협의를 계기로 MAI 협상이 동결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와 일본은 다자간 투자규범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이거나 미국은 양자협상을 선호하여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개도국은 인적 이동을 제한하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등 최혜국과 내국민 대우의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규범이 투자 유치국의 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에서 투자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이 조기 채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개도국이 구속력을 동반하거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협정은 상품교역에 대한 GATT나 GATS와 같이 포괄적 규정으로 투자의 정의, 내국민/최혜국대우, 투자자유화방식 그리고 일반적 예외와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고 이의 인력이동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투자협약이 단기 자본이동을 제외한 직접투자(FDI)를 대상으로 내국민대우를 투자 설립 후에 적용하고 GATS와 같이 적당한 수준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투자자유화 방식은 각국의 임의에 따른 양허(투자설립 전) 또는 유보사항(투자설립 후)으로 하고 자유송금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외와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허용하되 요건을 투명화하자는 입장이다. 투자인센티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핵심경영진의 국적요건을 금지하며 GATS와 달리 투자보호분쟁에서 투자자의 대정부 제소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3. 기타 의제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이 조기 채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개도국이 구속력을 동반하거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는 EU가 통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 및 자동화에 적극적이지만 미국은 신속통관과 투명성 확보에 관심이 있고 개도국은 관세평가와 원산지 규정 등 기존 협정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수산보조금의 철폐와 관련하여 보조금이 남획을 유발하여 환경 및 자원보존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찬성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안이 농산물 분야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국가의 대부분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라운드의 개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보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는 개도국의 반대가 거세다. 다자간 환경협약(MEA)을 WTO체제로 영입하는 문제와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한 환경마크제도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 규범제정에 있어서 WTO원칙과 환경원칙이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관련해서는 지리적 표시(포도주 등 주류와 기타 음식료품, 수공예품의 국제 등록), 생명공학 특허, 전자상거래 관련 지적재산권(도메인 네임과 인터넷 기술, 저작권) 등의 보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IV. 결 어

지난 11월 30일 시애틀에서 공식 출범한 뉴라운드는 우루과이 협상의 이행문제, 농업과 서비스 등 기협상의제, 새로운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견해차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미국은 기협상의제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빨리 NR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 있는 반면 EU는 UR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NR 협상을 기도하였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가,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물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제네바에서 논의가 속개될 것이므로 농산물과 서비스 이외 새로운 의제가 내년에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NR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 관세인하, 서비스 개방, 반덤핑협정, 무역과 경쟁정책 등에서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임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개방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일본이 쌀의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기들이 공산품에 기준한 관세의 인하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 농산물의 경우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개방을 연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며 농산물시장의 개방 없이 공산품의 교역자유화를 고집하기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각종 무역장벽과 함께 약 40조원이라는 재원이 소진된 구조조정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다른 한편 농산물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UR협상 이후 상당한 개방화가 진행되었고 서비스협정이 사실상 투자협정임을 고려하여 공산품에 준한 포괄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그 성격상 개방화가 국내산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이익단체의 입김으로 시장 개방이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관련 규정이 국제화되고 WTO의 규제를 받는다면 서비스 개방이 결코 낙관적일 수 없으므로 관련 부처가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기협상의제 이외 공산품의 시장접근이 의제로 채택되어야 우리나라에게 NR이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고관세 인하가 중요 관심사항으로 인하방식과 이행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제네바에서 논의가
속개될 것이므로
농산물과 서비스 이외
새로운 의제가 내년에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세계화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와
제도의 국제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기에 있어서 EU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견제하며 투자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의 개선과 경쟁정책의 논의를 미국에게 꾸준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보다 다자주의에 의한 개방이 유리하고 경제위기 이후 상당한 자유화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공산품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도인 점을 고려할 때 시애틀 협상의 보완을 위하여 회원국을 설득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제도적 자유화와 함께 양자협정과 전자상거래 등 기술 발달로 각종 교역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NR은 UR 이후 공산물 교역의 추가적인 개방과 농산물과 서비스 등의 실질적인 수입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자립형 경제체제의 지향보다는 과감한 경제개방을 통한 경쟁력 집중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논리적 당위성을 떠나서라도 주세분쟁에서 보듯이 세계화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와 제도의 국제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관련 국제기구에서 제창되고 있는 부패방지협약과 회계기준의 통일 등이 그 한 예로서 각종 제도의 국제화 바람은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뉴라운드를 계기로 체제의 효율성에 관하여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논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KIP

주요국의 경비처리원칙



孫元翼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IMF 관리체제 이후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기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관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를 위하여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세법규정의 정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8년 세법 개정에 반영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손비인정 경비의 개념을 세법에 명확히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손비인정 경비의 일반원칙을 국제기준에 따라 신설하였는데, 즉 손비로 인정하는 경비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지출의 증빙요건을 강화하였다. 1998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경비지출 증빙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증빙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증빙요건이 강화되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도 포함되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되던 기밀비제도의 한도액을 1999년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8년 세법 개정에 반영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손비인정 경비의 개념을 세법에 명확히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비처리기준을 체계화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업자산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10%로 축소하고, 2000년부터는 기밀비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적금 모집 권유비 손금산입제도도 2000년부터는 폐지하고 전액을 접대비로 간주하여 세제상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불이행시 손금산입을 부인하도록 개정하였다.

1998년 세법 개정을 통해 선진 기업과세로의 틀은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세부적인 방침 마련이 요구된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비처리 기준을 체계화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업자산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비처리 세부기준 등 세제면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II. 주요국의 경비관련 세제

본고에서는 각종 경비의 처리원칙과 관련된 선진 외국(미국,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가. 미국

1) 인건비

제공된 노무의 대가는 합리적 금액인 한 임원 상여를 포함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단, 사장법인의 경우 연봉 1백만달러 이상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공제대상 비용이 아니다. 합리성의 기준은 ①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로 ② 지급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③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고 ④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

노무 또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보수, 부적절하게 거액인 보수, 배당으로 간주되는 보수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소유자의 변경, 지배권의 변경을 조건으로 파매수회사의 임원에게 지불되는 보수가 당해 개인의 과거 5년간의 평균 보수액의 3배를 넘는 경우, 평균 보수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종업원의 생명보험을 위하여 지불한 보험료는 그 성질이 추가보수로서 그 보험료를 포함한 보수 전액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지불자인 고용주가 그 보험증서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보험금 수령자가 아닌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할 수 있다. 보너스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합리적인 보수액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공제되고 있다. 스톡옵션에 의해 제공된 스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는 노무 또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보수, 부적절하게 거액인 보수, 배당으로 간주되는 보수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복리후생비

급여는 개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데, 종업원 또는 임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급여 또는 경비로 구분한다.

- 통근수당: 회사가 부담한 경우 급여로 취급
- 사유차의 대여: 사유차나 회사의 비용으로 리스한 차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종업원의 업무수행에 사용된 경우 급여가 아님.
- 주택수당: 주택수당 등은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되지만 고용주의 편의를 위하여 종업원에 대해 무상으로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는 급여가 아님.
- 종업원 교육비: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만, 현재 업무의 능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교육비와 고용주 또는 법률상의 요구 등 급여·신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비는 급여에 포함하지 않음.
-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적격 종업원 할인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조건에 대한 보조: 사업소 부지 내의 무상주차장, 자동차세일즈맨에 대한 견본차량 대여 등은 종업원의 소득이 되지 않음.
- 소액의 복리비: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관리가 곤란할 정도로 소액인 물품이나 서비스는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부지 내 체육시설: 사업소 부지 내 체육시설의 운영비용은 종업원의 급여가 아님.
- 카페테리아제도: 카페테리아 이용 혜택을 선택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카페테리아 이용 혜택 대신 현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취급함.

일본에서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급여에 대한 부인 등의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인 급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

-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부: 동일인에 대한 대부 총액이 1만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는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
- 전근비용: 고용주가 부담한 전근비용은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생명보험부금: 단체생명부금(종업원에 대해 5만달러 이하, 가족에 대해 1인당 2천달러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임원·종업원의 생명보험료는 급여에 포함됨.

나. 일본

1) 인건비

법인세법상의 인건비란 사용인의 급료·상여·퇴직금, 임원의 보수·상여·퇴직금을 중심으로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를 포함한 것이다.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급여에 대한 부인 등의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인 급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 이는 사용인의 급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① 보수·급료 ② 상여 ③ 퇴직금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급여가 보수·급료이고 임시급여가 상여와 퇴직금이다.

임원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부적절하게 고액인 부분은 손금불산입된다. 부적절하게 고액인 부분이란 ① 임원보수의 합계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 또는 ②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당해 법인의 수익, 당해 사용인의 급료 지급 상황, 동 업종·유사규모법인의 임원 보수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부분을 말한다. 임원퇴직금 중 지나치게 고액인 부분은 당해 임원의 업무종사기간, 퇴직사유, 동 업종·유사규모법인의 임원 퇴직금에 비해 부적절하게 고액인 부분을 말한다.

2) 복리후생비

인건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란 ① 법정복리후생비와 ② 임의복리후생비가 있다. 법정복리후생비란 사용인을 고용함에 따라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장료 등 공과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임의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관혼상제·퇴직·레크리에이션·복리후생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임의의 보험료 등 외부자출제도의 부금, 복리후생시설의 운영비, 운동회·공연 등의 비용, 부의나 재해 위로금, 장기근속표창비용, 장례비용 등이 있다. 법정복리후생비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기업회계처리와 같이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로 하여 경리 형태를 불문하고 손금에 산입된다. 임의복리후생비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정복리후생비와 다른 점은 미지급금인 법정복리후생비가 손금에 산입되는 것에 반해 임의복리후생비는 현금주의에 따라 대부분의 미지급금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임원이나 일부 부·과장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급여로 되고, 대상으로 사용인이 포함될 때는 손금산입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다.

일본에서는
임의복리후생비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정복리후생비와
다른 점은 현금주의에
따라 대부분의
미지급금은 손비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대만

1) 인건비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감사역의 급여는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영업이익의 유무를 따진 후에 결의된 것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된다.

「營利事業設置職工退休基金保管運用及分配辦法」의 규정에 적합한 종업원퇴직기금을 설치한 회사는 당해 연도에 종업원에게 지불한 급여 총액의 100분의 8(4) 이내의 금액을 기금에 각출하여 이것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인정된다. 근로기본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세무기관의 인가를 얻은 후 매년 당해 연도의 급여지급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금액을 각출하여 이것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인정된다.

영리사업이 종업원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생명보험으로 영리사업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영리사업 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수취인인 경우에는 1인 1개월 2천NT\$ 이내의 부분은 피보험자의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서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는 노동보험(labor insurance), 국가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공무원보험(civil servants insurance)이 있다.

2) 복리후생비

종업원복리후생비는 종업원복리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복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대해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각출할 때의 각출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제운수회사를 제외한 영리사업이 종업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종업원 1인당 월 NT\$1,800까지는 급여소득에 포함하

미국에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출장에 대한 교통비는 공제대상이며 이러한 출장비는 기차, 버스, 택시,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한 업무상 출장에 드는 교통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 않는다.

2. 여비·교통비 관련 규정

가. 미국

교통비는 출퇴근 교통비를 제외한 지역 교통비(Local Transportation), 출퇴근 교통비(Commuting Expenses), 차량보조비(Automobile Expenses)로 분류된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출장에 대한 교통비는 공제대상이며 이러한 출장비는 기차, 버스, 택시,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한 업무상 출장에 드는 교통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교통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심지 외곽의 일시적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가용 유지비는 공제대상이며 자가용 유지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기름값, 타이어, 수리비, 보험, 감가상각, 자동차세, 차고임대료, 주차비, 통행비 등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해 주고 있다.

납세자들은 위의 비용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관련 운행거리에 기준운행비용(standard mileage rate)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1마일당 32.5센트(1998년 기준)로 되어 있다. 물론 주차비와 도로사용료도 기준 운행비용에 추가로 공제되고 있다.

여비(travelling expenses)의 경우 사업이나 거래의 수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비용일 때는 손금에 산입된다. 여비를 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금액, 시기, 행선지, 사업목적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여비를 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정확한 기록 대신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여비는 운임·식비·숙박비 외에 여행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전화·전보료, 비서의 경비 및 견본품 전시의 경비도 포함한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여비는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해서 발생하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여행 목적지에서 사업목적 활동과 개인목적 활동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 왕복 경비는 목적지에서의 활동이 주로 사업목적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공제한다. 목적

지에서의 비용은 사업목적과 개인목적으로 구분하여 사업목적에 안분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사업목적인지의 판단은 여행 중 사업목적에 위하여 사용한 시간과 개인목적에 위하여 사용한 시간과의 비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족을 동반한 경우 동반자가 납세의무자의 피고용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는 부인이나 자녀 또는 다른 동반자에 대해 여행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연차총회, 기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는 그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이 사업수행에 유리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강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의 국내여비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기업회계의 적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나. 일본

1) 국내여비

법인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기업회계의 적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은 통상 여비규정을 설정해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은 수급자의 급여로 인정된다. 여비규정이 없는 기업이라도 실비기준으로 타당한 금액의 지출은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2) 해외여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고 업무와 관련한 수입 획득에 필요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비로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당해 여행을 위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여비로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법인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여비의 금액 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처리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지의 판단은 그 여행의 목적·행선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에 열거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여행경비는 임원 또는 사

대만에서는 국외출장의 경우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규칙」이 규정하는 1일생활비표준을 따른다. 단, 숙박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숙박비 이외에 상기 표준의 50% 가산이 인정된다.

용인의 급여로 본다.

-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고 떠나는 여행
-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
- 동업자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단체여행으로 주로 관광목적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비

기업의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회의나 고객방문을 위한 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직원의 통근비는 일정 요건하에 일정 한도(교통수단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월 5 만엔이 한도)까지 비과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 대만

국내출장시 지출한 숙박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식비 및 잡비는 1인 1일 400원(총경리, 공장장은 500원)을 넘지 않으면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된다.

국외출장의 경우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규칙」이 규정하는 1일 생활비표준을 따른다. 단, 숙박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숙박비 이외에 상기 표준의 50% 가산이 인정된다. 항공료(승선료)는 항공(승선)예약권 또는 항공회사가 발행한 탑승(승선)권이 증빙이 되고 택시비는 출장서가 증빙이 된다.

3. 광고선전비 관련 규정

가. 미국

광고비란 신문·잡지·TV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 박람회 등에의 출품비, 전시회 관계비 등의 비용이다.

금액면에서 합리적이고 사업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소득에서 공제된다. 광고의 내용·성격, 업계의 관행, 다른 동종판매회사에 대한 부담실적 등이 합리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광고선전계획이 수년에 걸쳐 행해지고 그 효과가 수년에 걸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발생한 해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

나. 일본

광고선전비의 세무처리에 대해 법령이나 통달 등의 규정은 없고 고정자산, 이연자산, 판매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대만

건본품의 증정·판매에 대해 물품이나 상품을 첨가할 경우에는 증정품에 비매 품이라고 기재하고, 광고의 성질을 가진 것은 장부상에 증정물품의 명칭·수량 및 원가를 기재하여 증정 전에 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접대비, 영업활동에
부수되어 통상 필요한
접대비일지라도 지출액의
80%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접대비의
비용처리 요건을
강화하였다.

4. 접대비 관련 규정

가. 미국

1987년 이전까지는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 하였으나 1987년부터는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접대비, 영업활동에 부수되어 통상 필요한 접대비일지라도 지출액의 80%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접대비의 비용처리 요건을 강화하였다. 1995년부터 음식과 접대비에 한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 실제 비용의 50%까지 손금산입되나 접대를 위한 택시비 등의 운임은 전액 손금산입된다. 사업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부는 연간 1인당 25달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는(Directly-Related-To) 접대비란 장래의 수익 등을 얻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 접대가 행하여지는 동안 사업에 관계된 상담·교섭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접대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납세자가 참석하지 않은 접대나 나이트클럽, 극장, 스포츠경기장 등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업에 관한 회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된다고 보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한 식사접대(Business Meals)도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납세자의 고용인이 꼭 참석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거나 영업활동에 부수된 접대인 경우에만 손금처리 대상이 되므로 식사 전후에 실질적인 사업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출비용이 과도하거나 사치성 지출인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업활동에 부수된(Associated-With) 접대비로는 사업에 관계된 회의나 전시

- 하청공장, 특약점, 대리점 등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되
나 거래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됨.
- 매출처, 매입처 등에 속한 자의 경조사에 지출하는 금품 등의 비용
- 매출처, 매입처, 기타사업과 관계 있는 자(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취급하는 판
매업자 포함) 등을 여행 등에 초대하는 비용
-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그 제품 또는 상품의 도매업자에 대해, 도매업자가 소
매업자 등을 여행 등에 초대하는 데 지출한 비용
 -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나 매출할인 등과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매출처에 대해 사업용 자산 또는 소액물품(매입단가가 대체
로 3천엔 이하인 것) 이외의 물품을 교부하거나 여행 등에 초대하는 비용은
교제비에 포함됨.
 - 단, 매출할인 등이라도 일정액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여행
등에 초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적립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이 아니라 실제로 여행 등이 행해진 사업연도에 교제비를 지출한 것으로 봄.
-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경품교환권부판매 또는 경품부판매에 의해 매출처
에 교부한 경품 중 그 종류 및 금액이 제조업자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소액
물품이 아닌 경우 그 비용
- 회비, 찬조금, 기부금, 광고료, 강독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비용
- 고층건물, 맨션 등의 건설에 따라 주변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계자를 여
행 등에 초대하여 음식 등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이 기존의 상가 등에 진출하는 데 있어 주변 상점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영업보상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도 포
함)
- 매출처, 매입처 등의 종사원에 대해 사례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비용
- 공사입찰시 지출하는 담합금 등
- 매출처, 매입처 등 사외의 자에 대한 접대, 향응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부금, 예
누리, 할인,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전부
선지급한 교제비나 미지급교제비 등도 전부 교제·접대 등을 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자산의 취득가격과 이연자산에 포함되어 아직 손금에 산입

교제비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제비 등이란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지출한 교제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단, 기말자본금이 5천만엔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되지 않은 교제비 등에 대해서도 전부 그 지출연도의 교제비 등에 포함하고 있다. 교제비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제비 등이란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교제비, 기밀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일지라도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 회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제비 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손금부인하고 있다. 용도가 불분명한 접대비가 임원 또는 근로자를 통해 지출된 때에는 수취자인 임원 또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지출한 교제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단, 기말자본금이 5천만엔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말자본금이 1천만엔 이

〈표 II -1〉 대만의 교제비 손금산입 한도

(단위: 천만NT\$, %)

	계산기준	기준금액	보통신고	청색신고 ¹⁾
물품구입목적	구입가격	3 이하	0.15	0.2
		3 ~ 15	0.1	0.15
		15 ~ 60	0.05	0.1
		60 초과	0.025	0.05
상품판매목적	판매가격	3 이하	0.45	0.6
		3 ~ 15	0.3	0.4
		15 ~ 60	0.2	0.3
		60 초과	0.1	0.15
여객과 화물운송업	운송운임	3 이하	0.6	0.7
		3 ~ 15	0.5	0.6
		15 초과	0.4	0.5
노무 또는 신용제공업 ²⁾	영업수익액	0.9 이하	1.0	1.2
		0.9 ~ 4.5	0.6	0.8
		4.5 초과	0.4	0.6
공영사업	주관기관에서 구분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함.			

주 : 1) 청색신고제도는 국제국 또는 회계사에 의해 세무감사를 받은 경우 「營利事業所得稅藍色申報書實施辦法」에 준하여 청색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무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노무 또는 신용 제공업이란 여관, 임대업, 보험업 등을 말함.

자료 : 한상국,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5.

하인 법인은 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연 400만엔을 한도로 하고, 기말자본금이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인 법인은 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연 300만엔을 한도로 한다.

다. 대만

업무상 직접 지출되는 교제비는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 각 항목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며, 한도액은 <표 Ⅱ-1>과 같다. 특히 수출업무를 하여 외국환수입이 있는 경우, 한도액에 추가하여 수출에 의한 외국환수입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특별교제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비지출과 업무와의 연관성 및 지출금액의 합리성에 규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합리성 및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와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다.

Ⅲ. 각국 제도의 비교

경비지출에 대한 3개국의 관련 세법규정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비지출과 업무와의 연관성 및 지출금액의 합리성에 규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합리성 및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와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합리성 및 업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하여 그 강도가 훨씬 약하며, 제출이 요구되는 증빙서류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인건비의 경우 임원에 대한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비교 대상국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판단기준의 강도 및 구체성에 있어서는 차별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손비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리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총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비부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회사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비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임원의 직무내용, 동 업종·유사규모 법인의 실태 등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피고용인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

외국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며 피고용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피고용인의 소득에 포함시킬 금액의 규모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따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과도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있는 경우 경비 지출에 대한 손비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과다지출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외국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출금액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경비지출이 업무와 유관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관련 내용과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여야 한다.

여비·교통비의 경우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회사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시에 업무유관 여부와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미국은 지출금액의 합리성과 업무유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KPI**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안



韓 相 國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IMF 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자산유동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것은 증권화를 통한 자산의 유동화가 직접매각방식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위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주택금융제도의 선진화, 부실채권 정리와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수단으로 유동화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자산유동화에 장애가 되어왔던 주요 법적 요인들이 제거되어 자산유동화의 촉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비록 자산유동화 촉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자산유동화의 성장과 폭넓은 보급을 위해서는 조세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조세문제가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과 특정한 자산유동화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거래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세목을 자산유동화의 각 단계에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유동화 이전에 비해 세부

앞으로 자산유동화의 성장과 폭넓은 보급을 위해서는 조세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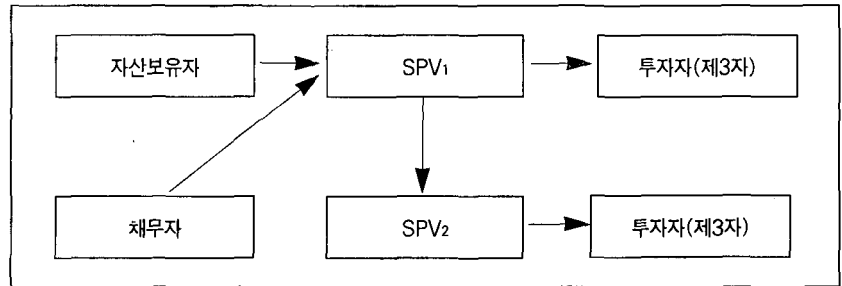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자산유동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답이 더 과중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자산유동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자산유동화가 활성화된다면 자산유동화를 하고자 하는 자산보유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나아가서는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조세 문제는 <그림 1>에 나타난 관계당사자, 즉 자산보유

<그림 1> 자산유동화의 단계별 과세



<표 1> 국내ABS 발행실적

발행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대상자산	자산보유자	발행금액(억원)		
			계	선순위	후순위
퍼스트	자동차할부채권	삼성할부금융	625	490	135
오리온	할부채권/카드론	동양카드	2,460	1,600	860
하나로	리스채권	동양증권	1,231	1,000	231
LSKA Holdings	부동산담보채권	성업공사	2,012	1,408	604
한미신탁	대출채권	한미은행	982	700	282
현대캐피탈오토	자동차할부채권	현대캐피탈	1,996	1,650	346
오토1999-1	자동차할부채권	대우캐피탈	2,740	2,290	450
하나로2	Super Koland채권	세종증권	2,100	2,000	100
캠코미래1차	특별채권	성업공사	3,200	2,950	250
우풍99-1	대출채권	우풍상호신용금고	653	400	253
TCM Korea	특별채권	성업공사	339	339	-
우정99-1	대출채권	우정상호신용금고	381	190	191
신중앙99-1	대출채권	신중앙상호신용금고	363	230	133
캠코미래2차	특별채권	성업공사	3,600	3,250	350
계		14건	22,682	18,497	4,185

자, 유동화전문회사(SPV), 투자자별로 나누어서 각 관계당사자에게 해당되는 세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공기업인 성업공사(KAMCO)와 한국토지공사(KOLAND)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촉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채권 및 부동산 등)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 중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자산유동화 현황

성업공사(KAMCO)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성업공사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다량의 부실채권(약 50조 5천억원)과 담보부동산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보유 부실채권 등을 집합 구성하여 제3자에게 직접매각하거나(KAMCO 일반담보부채권 99-1, 2 / KAMCO특별채권 1, 2 등), 동 채권 등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ABS : KAMCO 미래형채권 99-1, 2 등)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등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KOLAND)는 IMF외환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2조 6,166억원(약 386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와 같은 토지를 기초로 「기업토지 ABS」 및 「토지매출채권 ABS」를 발행한 바 있다. 「기업토지 ABS」는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기업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으며, 「토지매출채권 ABS」는 토지를 할부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S이다.

이처럼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유동성이 결여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채권과 부동산 등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증권화하는 것은 부실자산의 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기업보유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자산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증권화하는 것은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기업보유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세제에 의하면
자산보유자에
대해서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부가세,
인지세 등이 부과된다.

등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1. 현행 세제에 의한 과세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등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보유자이다. 자산보유자에 대해서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부가세, 인지세 등이 부과된다.

가. 법인세

자산보유자의 소득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소득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발생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나. 부가가치세

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실무상 채권양도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자산관리자(servicer)로서의 용역 제공은 금융·보험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제된다.

부동산 양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 ① 토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② 건물 : 부가가치세가 10%의 세율로 부과된다.

다. 특별부가세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다만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

년(KAMCO 및 KOLAND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차액은 자산보유자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손금불산입한다.

한편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를 시가의 70~130%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라. 인지세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를 국내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원본마다 35만원씩 부과된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진정한 매매 또는
진정한 양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 구성을
해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가. 법인세 과세 문제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유동화대상 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동 자산의 양도가 과세목적상 자금조달(financing)로 처리되느냐 또는 자산매각(sale)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채권의 양도가 자산매각으로 처리될 경우 거래와 동시에 양도차익이 실현되고 이에 대한 조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반면에 채권의 양도가 자금조달로 인식될 경우에는 거래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동 자산의 유효기간에 걸쳐 매년 과세하는 의견이 있다. 물론 거래 전기간에 걸친 자산보유자의 예상과세액은 자산의 양도가 자금의 조달 또는 자산매각으로 인식되느냐에 관계없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화대상 자산의 양도가 과세목적상 자금조달로 처리된다는 것은 곧 금전대차에 따른 '담보목적의 양도(secured finance)'로 처리됨을 의미하므로, 이는 '진정한 매매(true sale)' 또는 '진정한 양도(true transfer)'가 아니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유동화증권이 자산보유자의 과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자산유동화 관련 특별부가세의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야 한다는 기본원리와 상충된다. 따라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진정한 매매 또는 진정한 양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 구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는 완전히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채권의 양도를 자산매각으로 처리하여 양도시 한번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同條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자산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자산매각(진정한 매매 또는 진정한 양도)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양도를 자산매각으로 처리하여 양도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나. 특별부가세 과세 문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자산보유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자산유동화를 통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달성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금융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와 부합되도록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유동화일 경우에 한해서(KAMCO 및 KOLAND의 토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함) 특별부가세의 감면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되, 2000년 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취득한 자산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이익이 자본이득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특별부가세의 감면문제를 원칙론적인 면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타 자금조달 수단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자산유동화 관련 특별부가세의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IV.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

1. 현행 세제에 의한 과세

가.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의 총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자산보유자의 자산양도시 자산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만일 이렇게 되면 유동화전문회사에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이를 손금 불산입한다.

저당채무자가 지급하는 금액 중 이자소득으로 충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출채권매입을 통하여 국내금융기관의 대출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액의 27.5%(법인세 25% + 주민세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총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계산시 이미 지급된 원천징수액은 공제하여 주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을 것이다. 둘째, 유동화전문회사는 투자목적으로 대출채권의 지위를 취득한 것뿐이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접 대출한 것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첫째와 둘째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납부되는 총세액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총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뿐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금융·보험업(은행, 농협·수협·축협,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후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나.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과세

1) 취득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

유동화전문회사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총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뿐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제3의 매수자에게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이 양도차익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2) 등록세

① 저당권 이전 : 자산유동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자산유동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단, 추후 등기시 등록세 외의 기타 등기비용(등기대행수수료 등)은 발생할 것이다.

③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등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④ 국민주택채권매입 : 면제된다(자산유동화법 제36조).

3) 농어촌특별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등록세 또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보유로 인하여 법인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조세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보유로 인하여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세는 주로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이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개발이익부담금, 자산재평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라.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

1)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제3의 매수자에게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이 양도차익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특별부가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마.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multi-tier SPV)

자산유동화는 1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특수목적기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산유동화의 거래구조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 때문에 2단계 내지는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특수목적기구)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2단계 내지는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도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경부 질의 회신인 「금정 41210-38(1999.2.4)」에서도 하나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복수의 유동화전문회사가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2단계 내지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제2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상 자산을 재양도한 다음, 그 제2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2단계 내지는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제2단계 내지는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된 조세는 1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조세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제1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동법의 법리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2단계 내지는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제2단계 내지는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된 조세는 1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조세와 대동소이하다.

가능한 2. 개선방안

유동화전문회사를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상의 취급

현행 세제상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라는 특별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인식해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는 유동화 대상자산은 보유·이용목적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능한 유동화전문회사를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유동화전문회사를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道管(conduit)으로 취급하는 방법이다. 즉, 유동화전문회사를 완전한 도관으로 보아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다.

둘째,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인 도관으로 취급하는 방법이다. 즉,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이 일정비율 이상을 그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되는 부분을 모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일정비율 이상이라고 할 때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예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년의 세계개편안에서는 후자의 방안을 채택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 배당가능 금액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유동화증권의 종류 및 성격과 관련된 과세문제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 중의 하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종류 및 성격과 관련된 과세문제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크게 지분형 유동화증권과 채무형 유동화증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지분형 유동화증권은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출자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며, 출자증권의 투자자는 배당을 지급받는다. 채무형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채(senior note or bond) 또는 후순위채(junior/subordinated note or bond) 등의 채권의 형태로 발행된다. 채권의 투자자는 이자를 지급받으며 동 이자는 투자자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고, 동 이자를 지급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손금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선순위채와 후순위채에 대해서 과세할 때,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해야 할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¹⁾. 정관에 따라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앞의 양자는 모두 채권이지만, 후순위채 보유자에게는 선순위채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난 후의 잔여수입이 배분되므로 후순위채는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회피 통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부동산저당 투자기구(REMICs)에 대한 과세 제도에서는 후순위채에 대한 초과소득(excess inclusion)²⁾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후순위채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세제지원의 기한문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주고 있다. 이 법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시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인 감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감면으로 전환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자산유동화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시일 내에 달성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둘째,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자산 그 자체보다 그로부터 창출될 수익권을 대상으

후순위채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동 자산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cash flow를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첫째,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법 둘째,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동화 대상자산의 보유자의 잔여재산 배분청구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법 셋째, 상법상의 중간배당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배분 방법은 통상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규정하게 되며, 그 정관에 따라 처리된다.

2) 장기연방채 이자의 120% 이내의 소득을 정상적 소득이라고 하고, 동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초과소득이라고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함께
연장해서 기업의 향후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 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추가비용의 증가가 없는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
며, 자산에 대한 궁극적 소유권은 유동화증권 투자자 등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넷째,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유동화 대상자산은 보유·이용목적이 아니
라 자산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해서 보유
하는 상품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기간을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
월간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구
구조정 진행과정에 있고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정책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동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등 일부 세
목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기한 연
장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상당한 애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함께 연장해서 기업의 향후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이는 자산유동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기업의 구
구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유
동화일 경우에 한해(KAMCO 및 KOLAND의 유동화대상자산이 주류를 이룰 것
임) 특별부가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시적인
기한연장과 더불어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신속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금년의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동 기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서 동 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SPV₁ 또는 SPV₂)가 유동화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이익

은 자본이득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타 자금조달 수단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산유동화 관련 특별부가세의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자산(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과세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으로서의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자산유동화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즉, 자산보유자가 부동산담보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후 유동화전문회사는 동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경매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유입하게 된다(KAMCO 및 KOLAND에서 종종 발생함). 이때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상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마. 자산(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과세문제

자산보유자가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인 경우 자산유동화에 의해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부담이 자산유동화 이전보다 급격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산보유자가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인 경우 자산유동화 이전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에 의해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세율 적용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인 경우 자산유동화 이전에 비해 자산유동화 이후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자산유동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자산보유자와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서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과세의 연속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유동화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인수한 토지의 일부를 바탕으로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할 때, 동 대상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므로, 상품간의 형평을 위해서도 저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상 취급

자산유동화의 거래구조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 때문에 2단계 내지는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현행법에 의하여 현 단계에서는 2단계 내지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

제2단계 내지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된 조세는 1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조세와 대동소이하지만 제1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취득세, 등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는 불투명하다.

2단계 내지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의 거래구조의 유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고, 이 또한 자산유동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에서 이미 동 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보유자와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서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V. 정책시사점

정부는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자산유동화에 장애가 되어왔던 주요 법적 요인들을 제거한 바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유동성이 결여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채권과 부동산 등의 부실자산의 증권화를 통하여 부실자산의 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유동화 관련 조세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 공사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유동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세체계의 정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자산유동화로 인한 조세부담이 기존의 자금조달 수단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세체계의 확립을 시도했다. 특히 한시적인 조세지원제도(일몰법시스템의 도입)를 통해서 자산유동화의 정착과 활성화 그리고 구조조정 촉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체계는 기존의 조세체계와 부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조세행정상 약간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자산유동화 정착과 활성화 및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 공사가 공공적·비영리적인 특수 公法人이지만,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에 공평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유동화 대상자산의 유통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은 가볍게 하고 동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회**

유동화 대상자산의 유통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은 가볍게 하고 동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의 조세(III) -

李明憲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제3편 소비세와 지방세

독일의 소비세로는 부가가치세, 광유세(鑛油稅), 담배세, 증류주세, 커피세(이상 연방세), 복권세, 맥주세(이상 州稅)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에너지 및 환경정책상 중요한 광유세와 전기세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주(州, Land) 또는 기초자치단체(Gemeinde)의 세수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세, 영업세, 토지세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998년 2,502억마르크의 세수를 기록한 중요한 세목이다. 세수는 연방과 지방에 공동귀속되며 그 비율은 연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1993)에 의해 규율된다.

1. 납세의무자

영업 혹은 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업자이다.

2. 납부세액의 결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이 납부세액이 된다. 매입세액의 공제는 매입세액이 사업체의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 개인의 목적에 의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불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사업목적과 개인목적 모두에 사용되는 물품(예컨대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매

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출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사업목적 이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구입, 임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부터 매입세액의 공제가 50%로 제한된다.

3. 면세 및 세율

원칙적으로 일반세율(16%)과 우대세율(7%)이 있다. 우대세율은 음료와 음식점 판매분을 제외한 식료품, 근린교통, 도서, 신문, 문화재에 대해 적용된다.

-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EU 내 거래, 선박 수송, 항공수송, 월경(越境)운송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해 면세됨은 물론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진다.
- 면세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경우: 금융여신, 토지임대, 의사의 의료행위 및 기타 진료직의 서비스, 법적 사회보험의 서비스, 병원 및 양로원의 서비스, 사립학교, 연극공연장, 오페스트라, 박물관, 동물원 등에 대해서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이 면제된다.
- 소규모사업자(Kleinunternehmer)면세제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3만 2,500마르크 이하였고 당해연도 매출액이 10만마르크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자는 원하는 경우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다(매입세액공제는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권도 없음). 단,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면세조

치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일단 포기하면 그 결정은 5년간 구속력을 가진다.

- 농업경영체에 대한 혜택: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이 일치하도록 매출세율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납부절차

사업자는 각 4분기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세액예정신고와 사전납부를 행해야 하며(대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짐), 1년이 종료한 후 조세신고와 확정이 이루어진다.

세액산정기준은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은 조세의무의 발생시점이 물품의 인도 혹은 용역의 제공시점이며 대금의 영수시점이 아님을 의미한다.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단, 물품 인도나 용역 제공에 앞서서 선금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점에 따라 매출세액 납부의무와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소규모기업의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금영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II. 광유세(鑛油稅)

교통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목이다. 세수면에서도 1998년 667억마르크에 달할 만큼 개별 소비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의 하나로서 광유세법(Mineraloelsteuer 1992)에 의해 규율된다.

1. 대상품목과 납세의무

EU의 통일적인 품목 분류에 의해 과세 대상품목과 비과세 대상품목이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동력 및 가열용으로 사용되는 광유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1993년부터 윤활유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었다. 중요한 비과세 대상으로는 동력용, 가열용 연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광유, 항공운송용 유류, 영업용 선박용 유류 등이 있다. 납세의무는 생산자나 그 후의 판매단계업자들이 진다.

2. 세율

각각의 과세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동력용	
무연 휘발유	980 마르크/천 l
유연 휘발유	1080 마르크/천 l
디젤유	620 마르크/천 l
액체가스	612.50 마르크/천kg
공공교통차량용 액체가스	241 마르크/천kg
천연가스	47.60 마르크/MWh
대중교통차량용 천연가스	18.79 마르크/MWh
가열용	
경유	80 마르크/천 l
중유 (난방용)	30 마르크/천kg
중유 (발전용)	55 마르크/천kg
액체가스	50 마르크/천kg
천연가스	3.60 마르크/MWh

같이 종량세가 적용된다.

특히 가열용 경유에는 디젤엔진에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색소와 구분용 물질이 첨가된다. 참고로 1998년

동력용 유류 및 가스, 가열용 유류, 가열용 가스의 세수는 각각 604억마르크, 32억마르크, 31억마르크였다.

III. 전기세

1999년 4월 1일 '생태학적 조세개혁' 시대를 위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광유세 세율 인상과 더불어 새로운 소비세로서 전기세가 도입되었다. 전기세는 전기세법(Stromsteuergesetz 1999)에 의해 규율된다. 1999년 전기세의 세수는 32억마르크로 예측되고 있다. 전기세는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자원 절약적인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기세의 세수와 광유세 세금 인상은 연금보험의 보험료의 피용자 및 고용주 부담을 각각 0.4% 포인트 인하하는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쓰이도록 되어 있다.

1. 납세의무자

전기공급사업자와 출력 0.7메가와트 이상

의 발전시설을 갖춘 자체 전기생산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최종소비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인입(引入)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세대상과 세율

전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메가와트/시당 20마르크이다.

주요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수력, 유기물, 풍력, 태양열, 지열)으로부터 생산되고 생산자에 의해 직접 소비되는 전기
-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만을 공급하는 공급망의 전기
-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

우대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야간비축난방기(1999년 4월 1일 이전 설치) 가동을 위하거나 궤도철도, 전철 운행용 전기에는 천와트/시당 10마르크의 세율이 적용된다.
- 제조업, 농림업 사업체에 의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경우에는 연간 50메가와트/시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메가와트/시당 4마르크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세액공제

제조업체의 경우, 1998년 12월 19일의 사회보험부담률법(Beitragsatzgesetz)의 부담률을 1998년에 적용하였다면 얻

을 수 있었을 기업부담금 감소분의 1.2배를 초과하는 전기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V. 차량세

차량세는 차량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세법(Kraftfahrzeugsteuergesetz 1994)에 의해 규율된다. 주세(州稅) 중 세수 규모상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1998년 세수는 152억마르크였다.

1. 과세대상

공용도로에서의 운행을 위한 차량보유가 과세의 대상이 되며 차량등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50% 감액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5년간 과세가 면제된다.

2. 세율

승용차, 오토바이, 기타 차량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세율이 구
성되어 있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오염물질 배
출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우선, 독
일 도로교통허가법
혹은 EU 지침에 따

라 저오염(低汚染)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으로 구분된다. 저오염 차량은 다시 주행거
리당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산화질소 및 분
진 배출량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통
상 유로-1에서 유로-4(오염물질 배출량이 가
장 낮은 차)까지로 지칭된다. 유로-3 및 유
로-4 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단, 이 면제는 유로-3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전에, 유로-4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 전
에 운행 허가된 차량
에 한한다. 면제기간
이 끝난 후에는 일반
엔진의 경우에는 배
기량 100cm³ 당 10
마크, 디젤엔진의
경우에는 27마크

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도 면제가 행해진다.
즉, 운행허가일과는 무관하게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90g/km 이하이거나(이른바 '3-1 차
량'), 2000년 1월 1일 전에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km
이하인 차량(이른바 '5-1 차량')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그 이외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와 같은 세율이

(단위: DM/배기량 100cm³)

		2000년	2005년
유로-2 차량	2003.12.31까지	12.00DM	29.00DM
	2004. 1. 1부터	14.40DM	31.40DM
유로-1 차량	2000.12.31까지	13.20DM	37.10DM
	2001. 1. 1부터	21.20DM	45.10DM
	2005. 1. 1부터	29.60DM	53.50DM
저오염 차량 비인정	2000.12.31까지	21.60DM	45.50DM
차량중 오존경보때	2001. 1. 1부터	29.60DM	53.50DM
운행이 허가되는 차량	2005. 1. 1부터	41.20DM	65.10DM
저오염 차량 인정	2000.12.31까지	33.20DM	57.10DM
차량중 오존경보때	2001. 1. 1부터	41.20DM	65.10DM
운행이 불허되는 차량	2005. 1. 1부터	49.60DM	73.50DM
기타 차량	2000.12.31까지	41.60DM	65.50DM
	2001. 1. 1부터	49.60DM	73.50DM

자료 : Bundesfinanzministerium(1999) Unsere Steuer von A bis Z

적용된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모터 배기량
250cm³ 당 3.60마
르크의 세율이 적용
된다.

기타 차량에 대해
서는 그 중량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V. 영업세(Gewerbesteuer)

영업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목 중
세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1998년 세
수는 505억마르크였다. 영업세는 개념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경제주체의 경제
적 능력에 대한 징세가 아니라 토지나 경영체
라는 객체 혹은 그 수익 발생력에 대한 과세
이다. 영업세는 경영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소
득세나 법인세의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
으로는 영업세(Gewerbesteuer 1991)에 의
해 규율된다.

1. 과세대상

독일 국내에서 경영되는 영업체가 과세대상
이다. 비과세 대상 영업체로는 공기업이었다
가 최근 민영화된 기업들(Deutsche Post,
Deutsche Postbank, Deutsche Telekom),
중앙은행, 각종의 정책금융기관들, 공익, 자
선, 종교목적의 법인 및 조합,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 조합,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교육

기관 등이 있다.

2. 세액의 산정방식

영업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
된다.

영업세액 = 영업수익(Gewerbeertrag) × 기본세
율(Steuermaßzahl) × 자치단체별 징수율
(Hebesatz)

3. 영업수익의 산정

기본적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 기준
이 되는 영업소득의 산정방식에 따르지만 객체
에 대한 과세(Objektsteuer) 라는 특성을 반영
하고 토지세에 의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 행해진다. 조정분 중 가산되는 주요항목
은 다음과 같다.

- 영업체의 창설, 취득, 확대, 개선과 관련된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의 50%
- 영업자본의 일시적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채의 이자 지불액의 50%
- 임차료의 50%
- 영업자가 출자자로 되어 있는 상사, 합자회
사 혹은 다른 회사의 손실지분.
한편, 감산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자의 영업자산에 속하는 토지의 통일가
(Einheitswert)의 1.2%
- 영업자가 출자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익
지분

- 외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영업수익분
- 외국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의 이익 배당

4. 세율

세액은 과세표준액에 기본세율(Steuermeßzahl)을 곱해 얻어지는 기준세액(Steuermeßbetrag)에 다시 자치단체별 징수율(Hebesatz)을 곱하여 얻어진다. 기본세율은 연방법인 영업세법에 의해 결정된다. 현행 기본세율은 원칙적으로 5%이다. 단, 자연인이나 인적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수익 4만 8천마르크까지 기초공제가 행해지며, 이것을 넘어서는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1%의 한계세율에서 출발하여 2만 4천마르크마다 한계세율이 1% 포인트씩 추가적으로 상승하되 최고 한계세율은 5%로 한다.

한편 징수율(Hebesatz)은 자치단체가 그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연도에 대한 징수율을 결정한다. 이 날짜 이후의 징수율 수정은 최초결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1998년의 경우 베를린의 징수율은 390%, 함부르크 470%, 뮌헨 490%, 프랑크푸르트 515%였다.

VI. 토지세 (Grundsteuer)

토지세는 영업세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세수가 귀속되는 세목이다. 1998년 세수 162억마르크로 지방

자치단체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법적으로는 토지세법(Grundsteuergesetz 1973)에 의해 규율된다. 건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한 토지세액은 경영비용으로 처리된다.

1. 과세대상

국내의 토지소유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공단체, 교회, 공익법인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2. 세액의 산정방식

영업세의 경우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ext{토지세액} = \text{토지평가액} \times \text{기본세율(Steuermeßzahl)} \times \text{자치단체별 징수율(Hebesatz)}$$

3. 토지평가액

과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구 서독지역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평가법

(Bewertungsgesetz)에 정해진 1964년 가치관계 기준에 따른 통일가(Einheitswert),

- 구 동독지역의 농림업 경영체(주거시설 없음)에 대해서는 평가법에 정해진 1964년 가치관계 기준에 따른 대체경제가(Ersatzwirtschaftwert),

- 구 동독지역의 토지 중 평가법에 의해 1935년의 가치관계에 따라 통일가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토지의 경우는 1935년의 통일가,

- 구 동독지역에서 1991년 전에 건축된 임대주택의 토지와 1가족주택 중 1935년 기준 통일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법 42조에서 정하는 대체평가기준(Ersatzbemessungsgrundlage).

280%에서 60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많은 자치단체들은 토지세액에 토지소유주가 납부할 쓰레기 제거요금, 도로청소요금, 하수도요금 등을 연계시키고 있다. 

4. 세율

세액은 과세표준액에 기본세율을 곱해 얻어지는 기준세액에 다시 자치단체별 징수율(Hebesatz)을 곱하여 얻어진다. 기본세율은 연방법인 토지세법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 서독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성질의 종류에 따라 0.26%에서 0.35%.

- 구 동독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종류와 자치단체군(Gemeindegruppe)에 따라서 0.5%에서 1%.

- 농림업 경영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6%.

한편 징수율(Hebesatz)은 자치단체 의회가 그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징수율은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

- 주 제 :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10:00~12:15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사회자 : **곽래원** / 서강대 교수
- 발표자 :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 토론자 : **강응선** /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이석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진표 / 슈로더투자은행 한국지점장
임주영 / 서울시립대 교수

1. 조세 측면에서의 비전

1. 기본 모습

- 바람직한 조세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와 상응하여 그 규모가 적정해야 하며, 이의 국민들간의 부담이 공평해야 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토록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과세부담의 적정성과 공평성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은 국가 선진화의 척도로서 국가 발전의 기본 요건임.
- 조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 부담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이나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한국에서는 재정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최근까지 균형재정 기조가 견지되어 왔음.
- 그러나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거리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 거래 투명성의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과세의 누락이 많았고 세제가 고도 경제성장을 지원토록 운용되어옴에 따라 공평성을 충분히 기하기가 어려웠음. 그에 따라 과세도 상당 부분 인정과세의 형태가 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이 상존하고 납세비용도 높은 편이었음.
- 경제의 비효율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세제가 철폐되어 경제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향후 조세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사회는, 첫째로 국가 서비스와 그 비용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공고화된 사회가 될 것임.
-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국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납세의식은 크게 고양될 것임.
- 둘째, 전반적인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소득과 과표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임.
- 이에 부가하여 조세의 간소화 및 합리화가 촉진되고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될 것임.
- 셋째,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세가 정착될 것임.

- 조세의 중립성이 더욱 신장되도록 조세체계 및 조세감면제도가 합리화·간소화될 것이며,
- 소득과 과표의 투명성으로 근거과세와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어 인정과세로 인한 과세상의 마찰과 부조리의 소지가 없어지고 납세순응비용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것임.

○ 넷째, 국민의 생존과 국가 발전의 기본이 국제경쟁력에 달려 있는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아주 편한 조세환경이 구축될 것임.

- 기업에 대한 세제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보다 간소화 및 명료화되고, 납세신고제도가 정착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임.
-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되고 기술개발, 인적자본 투자, 기업의 경영전략을 원활히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제가 운용되어야 함.

○ 다섯째, 사회적 환경의 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조세제도가 마련될 것임. 글로벌화,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 지방화 등 사회적 환경의 급변은 새로운 정책상의 과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효과도 종래와는 다르게 만들고 있음.

- 글로벌화,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의 환경에서 조세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가경

쟁력과 국민생활 안정을 원활히 뒷받침하도록 세제를 능동적으로 운용해야 함.

- 특히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에 따른 계층간 소득 불균형, 마찰적 실업의 증대 및 인구의 노령화 등에 대응하여 조세의 소득배분적 기능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이 조성됨으로써

-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깊어지고 높은 소득의 고액 납세자가 존경을 받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더욱 신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
- 아울러 소득과세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개인·정보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장되어 납세자와 정부간의 상호신뢰와 만족감이 높은 사회가 될 것임.

2. 부문별 전망

가. 재정여건 및 조세부담률

- 균형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오던 우리 재정은 최근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적자로 반전되었음.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회복, 기업의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생산력 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증대, 산업구조조정 및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지나친 세수 증대나 적자재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다음 세대의 부담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조기에 건전 재정기조를 회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바,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세출증가율을 2000년에는 5%, 그 이후에는 6%를 유지토록 하고 있음.
- 이와 아울러 재정적자의 타성에 빠지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상과 같이 할 경우 2004년에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2014년 정부부채/GDP의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세입을 뒷받침하는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
- 조세부담률을 경제성장률과 세수의 소득탄성치로 추정해 볼 때 현재의 18.9%에서 향후 완만한 증가가 유지되어 2010년에는

21.7%(국세 17.2%, 지방세 4.5%)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부담률은 현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향후 소득증가를 감안하면 국민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임.
- 조세부담의 증대는 상당 부분 세율 인상보다는 소득 및 경제활동의 증대와 과표양성화에 따른 것이 될 것임.

나. 조세제도

- 조세제도는 글로벌화,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 지방화 등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상응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 변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조세제도가 국제적인 규범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과세기반을 유지하면서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계속 추구하는 일에 세계 운용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는 점임.
- 국제간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거래 상품에서 무형의 지적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은 과세 포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아울러 생산요소와 기업들이 조세부담이 가벼운 환경을 찾아 계속 이동할 것이며 국제간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 과세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임.

- 과세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및 재산세와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상대적 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응능과세와 형평성의 조세원칙과 충돌될 수 있음.
- 첫째, 조세체계가 크게 단순화될 것임.
- 복잡한 조세체제는 징세비용의 증가 및 납세응비용의 가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조세회피수단 개발에 대한 유인을 확대시킴. 이와 같이 정교해지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더욱 세분화된 법규가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됨.
- 세제는 납세에 따른 제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하나, 현실의 세제는 복잡한 감면제도, 다양한 과세대상, 비현실적인 자산평가, 난해한 과세표준과 세액산출 방법 등으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적당히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정부부과결정을 기다리는 납세관행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 그 동안 경제개발과 과세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제가 자꾸만 복잡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성숙된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선진국처럼 간소화·명료화된 조세체계를 가지게 될 것임.
-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국세는 16개, 지방세는 15개의 세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바, 세목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고, 세수기여도가 낮거나 중복되는 세목이 많음.
- 장기적으로 현재 31개인 세목이 단계적으로 통폐합되어 크게 단순화될 것임.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 주민세와 같은 부가세(surtax)가 많은바, 이들 제 목적세의 기능을 점검하여 일부 세목은 일반세로 전환될 것이며, 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될 것임.
- 둘째, 소득세제가 개편되어 기능이 확대되고 소비세의 역할이 꾸준히 유지되는 세제가 될 것임.
- 소득세는 선진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재정의 기여도,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 재분배의 기능상 근간이 되는 세제이나 우리나라는 소득세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임.
- 앞으로 소득세가 개편되어 이상과 같은 소득세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세제가 될 것임.
- 우리나라의 소득세 기능이 미약한 것은 포괄적 소득세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소득 및 과표 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소득세의 기능 강화는 한계세율의 인상이 아니라 과세기반의 확대와 종합과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
 - 소득세가 지나치게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게 되면 저축의 감소와 노동의욕의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자본과 전문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대에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이동하게 되므로 높은 소득세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고용기회를 줄이고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됨.
 - 소득세율은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 국제적 이동의 중립성이 유지되는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선진국의 동향도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과세기반의 확대는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적 세정을 바탕으로 우선 탈루 소득 및 과표의 양성화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 이와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착을 통한 포괄적 소득세제로의 이행으로 소득세제가 선진화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 글로벌 환경에서 소득세율정책상 제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중심에서 소비 및 재산 중심으로 과세기반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법인소득세 비중은 35% 수준에서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비세의 비중은 30%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소득세보다 소비 관련 세제의 비중이 높으나 소득세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을 것임.
 - 그러나 간접세의 과세기반도 공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 미래에는 무형의 지식상품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상공간을 통한 국제적 상거래가 활발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세원 포착을 어렵게 만들어 간접세 과세기반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재산과세의 경우 세수상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이의 구성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임.
 - 우리나라의 재산세제는 선진국의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취득단계과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과 같은 보유단계과세에 비해 더 큼.
 - 앞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응능과세를 살리는 취지에서 선진국과 같은 재산보유에 대한 상대적 증과세의 형태로 접근하게 될 것임.
- 셋째, 조세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되고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될 것임.

- 개발경제시대에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양산된 조세감면제도가 성숙된 시장경제 하에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감면제도는 지급방법, 지급강도, 지급범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 규범과 경제원리에 맞게 조정될 것임.
 - 특정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조세지원 전 반을 국민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세 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세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임.
 - 현행 지방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을 살리기 어려운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 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제도 아울러 발전될 것임.
- 이렇게 됨으로써 소득세의 본래의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소비세 및 재산세의 역할도 꾸준히 유지되어 전체적으로 직·간접세가 적절히 조화될 것이며, 국세의 비중보다는 납세자의 생활편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조세구조가 될 것임.

다. 거래의 투명성 및 세무행정

- 세정은 선진국에서처럼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근간으로 근거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신고납부가 정착되지 못하고, 근거에 의한 과세보다는 세무당국의 인정에 의한 과세가 상당부분 시행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이 선진국이나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에 따라 세징도 납세자의 권익보다는 세수 확보의 입장에서 운영되어 옴으로써 징세과정에서 투명성이 미흡하고 납세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앞으로는 이상과 같은 세징의 문제가 극복되고 선진 세징이 구현될 것인바, 우선 거래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근거과세의 기반이 마련될 것임.
 -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의 진전과 정부의 지원시책으로 거래의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임.
 - 모든 거래에 있어서 현금 사용은 소액거래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 전자화폐, 기명 수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 및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명제가 정착될 것임.

- 거래의 투명성이 정착되면서 소득과 과표의 양성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높아 질 것임. 그에 따라 세정은 획기적으로 달라 지게 될 것임.
- 근거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과세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순응 비용이 최소화될 것임.
- 이와 아울러 과세가 종래의 표준소득률이나 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소득 이나 거래가격에 의한 자진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과세의 실효성이 획기 적으로 높아지고 징세과정에서 신뢰성이 확 보될 것임.
- 부가가치세의 특례과세제도는 자연히 그 존 재 의의를 상실하고 일부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익을 위한 제도로만 존 치될 것임.
- 그에 따라 세무행정의 기초가 크게 바뀌어 야 하며, 종래의 과세 부과 중심의 세무행 정에서, 과세 부과는 근거에 의한 자진 신고제도가 정착되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와 사후의 조사기능 위주로 운영될 것임.
-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와 공무원의 직접적인 접촉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질 것이며 납세 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게 될 것임.
- 이러한 여건에 발맞추어 납세자의 의식도 크게 선진화될 것임. 국가 서비스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과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가 공고화해짐으로써 납세의 식이 크게 고양되고 고소득에 따라 고액 납세자가 존경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될 것임.

II. 제약요소

- 국가 선진화의 기본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래의 투명성,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및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화 수준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
- 이러한 거리를 좁히는 일은 개별 경제주 체의 이해관계의 변동과 과도기적 불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임.

1. 과세의 공평성

- 우선 과세 공평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선 진국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그 이유의 첫째는 조세체계에 있음. 과세는 크게 소득, 소비, 그리고 재산을 그 대상으 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선진국의 일반적 조 세체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세제의 두 드러진 특징은 세부담이 역진적인 소비에 대한 과세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세가 불충분하며,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수 준도 낮다는 점임.

- 둘째, 소득세제상 광범위한 비과세·분리과세의 존재는 소득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 종류별 실효세부담률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태이며, 광범위한 비과세 저축 및 세금우대 저축이 존재하고 있음.
 - 연금소득, 유가증권양도차익, 파생금융상품, 부가급여 등에 대해 과세되고 있지 않음.
 - 부동산 양도차익, 산림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되고 있음.
- 셋째, 과표양성화 정도가 낮아 선진국과 같은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당한 수준의 과표가 탈루되고 있음.
 - 특히 개인사업소득자와 재산 상속·증여 등에 있어 과표의 양성화 정도가 낮아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목에서 조세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특례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탈루로 까지 이어짐.
 - 이에 따라 명목적으로는 신고납부제도이나 실제로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세무당국의 부과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의 투명성이 불충분하고 마찰과 부조리의 소지가 있었음.

- 넷째, 그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강구되어 왔으나, 성숙된 시장경제 하에서는 조세의 중립성과 세원 기반을 약화시킴과 아울러 형평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일단 시행된 감면은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해 존속되는 경향을 보임.
 - 1999년 현재 12개 분야에 걸쳐 110여 종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에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 1997년의 경우 내국세 대비 5.5%로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조세감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실정임.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과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음.

2. 세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납세의식

- 거래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근거과세 및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여건하에서 징세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징세당국자의 입장에서 운영되어 왔음.
 - 그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보다는 징세의 효율성이 중요시 되어왔으며 납세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호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세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납세 성실도도 비교적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러한 납세의식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쉽게 고쳐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우리 국민은 불행히도 조선말기와 일제 식민지배기의 수탈을 체험하면서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납세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
-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과표누락이 보편화되어 있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의 존재와 일부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의해 적절한 세부담 없이 부의 세대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3. 국가조세권에 노출되지 않는 금융자산

- 오랫동안 근거과세가 정착되지 못한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이 국가조세권의 밖에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금융자산은 양성화에 따른 신분노출 및 과세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시 금융시장을 이탈하는 등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4. 균형재정예의 제약요인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세출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전제임.
-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 이후 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분야에서부터 세출수요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향후 이전지출 및 이차지급의 확대 등으로 세출이 경직화되어 세출을 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 반면 이렇게 세입기반을 확충할 여지가 많지 않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왜곡의 시정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지원이 불가피함으로써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 소득세 세율은 글로벌화에 따라 높여가기가 어려워지며, 간접세의 경우도 과세포착이 어려운 가상공간을 통한 지적상품의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입기반이 약화될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재정의 효율화는 물론 재정수요의 적절한 조정과 세수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5.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

- 글로벌화,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 지방화 등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사회·경제적 질서가 급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세계 및 세정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달라지게 만듦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과세기반에 큰 변동을 주고 그에 따라 조세의 공평성 등 기본목표 달성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 글로벌화에 따라 상품 및 생산요소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향을 가질 것임.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 및 전문직 근로자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낮추고 이동이 부자유스러운 노동소득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향이 예상되어 응능과세의 원칙이 저해됨은 물론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중심에서 소비 및 재산 중심으로 과세기반이 전환되어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에 따라 국제

적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 상품도 무형의 지식상품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인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과세포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간접세의 과세기반도 그만큼 약화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국경 없는 기업활동을 통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간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현 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면 비전문인력의 실업이 증대되고 전문적 지식인력과의 소득격차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조세의 사회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다음으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은 조세의 자동안정장치를 약화시키게 되어 정책 운용에 제약을 주게 될 것임.
 -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는 수입수요의 유발로 경기효과를 줄이게 될 것이며, 그 역의 경우도 같은 논리가 성립됨.
 - 일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외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국제간의 조세경쟁을 유발시켜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는 별로 없는 반면 국제적인 자원배분의 왜곡만 초래하게 됨.
- 끝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지향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든든한 재정 기반을 가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조정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임.

확보해야 할 것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와 글로벌화, 정보화 등에 따른 세입기반의 변동에 대응하여 세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본 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세입기반의 안정과 과세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함.

III. 정책 과제

- 앞으로 3년간 이상의 제약조건을 해소할 세제 및 세정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투명한 세제와 세정의 선진화로 국민의 납세 의식이 선진화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첫째, 전 세목에 걸쳐 비과세 및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 조세감면의 일몰제도, 조세감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부가가치세 감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세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1.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의 안정

-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기본적으로 세입의 증가보다는 세출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임.
- IMF 금융위기 이후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추가적 세부담 증대는 가급적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수요의 적절한 조정에 주력해야 함.
- 대규모 세입증대가 불가피한 우발적 상황에서는 조세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직접세와 간접세를 조화롭게 개편함으로써 세원 확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세수는 세율의 인상보다는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하여

- 둘째, 소득 관련 세제에 있어서 소득세·증여세의 포괄주의 전환,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소득세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현행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된 과세소득을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가급여(fringe benefit), 연금 등 과표가 누락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와 더불어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발전 추이를 보아가면서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에 대한 적정과세방안을 강구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다른 재정수요와 세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연금과세 실시 방안을 검토하되, 연금과세는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 셋째, 향후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이동이 비교적 적은 소비세를 통한 세수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세 증세는 환경친화적 소비세 증세 및 특례과세제도의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장의 실패' 교정적 성격이 강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의 필요성이 큰 품목에 대한 세율인상 또는 신규 과세를 통해 세입기반 안정과 함께 사회적 외부비용 축소를 도모해야 함.
- 에너지 전반에 대한 과세의 재검토를 통해 과세대상 품목간 또는 품목간 균형과세를 도모해야 함.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는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바, 휘발유에 비하여 세율이 낮은 경유와 LPG 및 비과세 중질유에 대해서는 세율체계를 조정하거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에 보조를 맞추어 장기적으로 환경세 도입 등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산업정책상

대비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함.

- 넷째, 근거과세의 보편화,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하여 탈루소득 발생 여지를 축소해 나가야 함.
- 다섯째, 전자상거래, 국제간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 등 조세환경의 급변에 따른 과세기반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수기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2. 세제의 효율성 제고

- 개발경제시대를 거쳐 글로벌경제시대에서 성숙된 시장경제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세제가 국민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조세체계를 가능한 한 간소화·명료화하도록 하며,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살려나가도록 함. 우선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서 조세범위의 재정립, 유사세목의 통합, 실효성 없는 세목과 목적세 등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 부당이득세는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는 반면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조세 성격이므로 이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세목 중 징세 및 납세협력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 세목들은 과감히 폐지하여 제도의 단순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세수기여도가 낮은 균등할 주민세도 폐지하여야 함.
-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는 목적세도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9개 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가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본세로 통합 운영하고,
-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하며,
- 주민세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은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및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따른 증가분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교통세(휘발유·경유)와 특별소비세(등유·LPG·LNG)로 이원화되어 있는 석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되, 교통세의 경우 전반적인 세율수준의 조정 후에 특별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화서비스에 대한 전화세 부과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통신 서비스에 전화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외국의 원거리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가 불가능한 실정임.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시기는 세수 상황을 고려하여 2001~2002년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나치게 폭 넓게 인정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전향적으로 축소·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 개발경제시대에 도입되었던 기득산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양도세 감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함.
-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아가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을 연계하여 일정기간 운용한 다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감면관리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함.
- 아울러 세제도 알기 쉽게 개선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납세순응비용의 절감을 달성토록 해야 함.
- 이와 같은 조세체계의 정비는 무엇보다도 세수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술한 조세감면의 축소는 세목의 폐지로 인한 부족세수를 보완해줄 것이며, 특히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 이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



3. 공평과세의 실현

- 첫째,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으로써 탈루 소득과 과표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임.
- 소득 및 과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의 세제상 우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성실기장을 위한 지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임.
- 과소 신고 및 불성실 기장에 대한 가산세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연한을 국세부과권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특히 사업소득자의 과세포착률 제고를 위해 기장의 성실성을 적극 유도하며,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2000년부터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로, 특례과세는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이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를 폐지해 나가야 함.
- 둘째,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재산세의 경우 거래에 대한 과세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재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특히 고급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기준을 통일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실거래가격으로 접근시켜 나가야 함.

-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부가 그대로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부과체척기간의 연장 등으로 과세에 대한 추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각종 공제수준의 조정 및 자산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함.
- 셋째,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2001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도록 하고, 종합합산과세 기준금액의 하향조정과 병행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충분히 해 나가야 함. 자금세탁법을 시행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적 자료유통을 방지하고, 금융소득별, 특정금융상품별로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과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함.
- 소비세제를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함.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 방지와 사치적 소비억제의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토록 해야 함.

- 이와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적정수준에서 조화를 기하는 등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함.

4. 글로벌화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

- 첫째,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세입기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대내적으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우선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에 대응하여 과세기반을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제를 운용해야 함.
-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 및 전문인력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에 있어서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중과로 인한 생산요소의 유출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세율은 선진국의 일반적 기준을 감안하여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수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함.
-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야 함. 1995년 세법개정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도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제도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해외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국 법인 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국법인의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간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의 투자에 대한 왜곡요인을 제거해야 함.

- 1995년에 도입·정비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tax haven)대책세제 등 조세회피 방지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내 세수기반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거주자의 해외자산 및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정부와의 조세 관련 정보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최소화해야 함.
- 장차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응하여 이의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거래에 대한 합리적 과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 특히 단기 투기성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방지하고 외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금융 거래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 나가면서 필요시 관련 세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함.
- 아울러 조세제도 및 조세지원체계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야 함.

-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국내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역외금융 지원제도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OECD에서 제도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며, 간주의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OECD에서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WTO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상계보조금을 축소·폐지하고 허용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함.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세지원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력개발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허용보조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교육·훈련, 환경, 벤처캐피탈 등을 중심대상으로 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관세정책은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 조성을 위해 관세율체계의 합리적 개선, 관세지원제도의 개선, 불공정교역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용의 활성화, 국제관세협력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New Round(NR)에 부응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국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현행 균등관세율 체제의 기초를 유지하되 NR 협상과 연계하여야 함.
- 국내생산이 미미한 원자재의 관세율 인하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무세화 조치의 파급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관세율을 정비해야 함.
- 탄력관세제도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등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 운용함.
- 21세기 초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동북아의 물류거점 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Kyoto협약의 국내법령 수용 및 세관행정전산화 등을 통해 통관제도를 지속적으로 간소화·선진화하며
- WTO, WCO, APEC 등에서 세관절차의 국제적인 표준화, 간소화를 위해 아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 관세환급제도에 대하여는 원·부자재 세율의 점진적인 인하와 함께, 관세환급제도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함.
- New Round(NR)에 부응하고 국내산업의

- 특정산업에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관세 감면제도를 시설 투자촉진·국산자본재 산 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점진적으로 관세 감면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자본재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함.

- New Round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예외 없 는 일괄적인 관세 인하 방식을 통하여 선진국 의 고관세품목과 개도국의 전반적인 관세인 하를 유도하여 수출시장의 확대를 도모함.
 - 양허범위의 확대, 경사관세율체제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함께 불투명한 관세장벽의 축 소를 추진해야 함.
 - 농업부문 협상에서는 국내생산이 미미한 품 목의 관세인하와 함께 Green Box의 현상 유 지 등 농업 구조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 관세율 인하 등 시장개방과 동시에 국제간 불공정교역에 대하여는 WTO 규정에 따라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활용하되, 선진 국에서의 반덤핑제도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NR에서 반덤핑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 을 적극 추진함.

- 선진형 경제구조를 성취하기 위하여 현행 균등관세율정책의 기초를 견지하는 한편
 -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제도와 수출입통관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또한 관세감면제도의 점진적 감축과 반덤핑 관세제도의 탄력적 시행으로 국내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함.

- 셋째, 글로벌시대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세제도를 간소화하며 국 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야 함.

- 기업이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구조조정이나 M&A 등 경쟁전략을 보다 신속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바, 우리의 세제가 선진국 기준 에 비추어 이 같은 기업의 전략 추진에 걸림돌 이 되지 않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함.
 - 지주회사 도입과 관련된 과세제도는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 결과에 따 라 변화될 경제력 집중의 문제와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함.

- 법인세율을 현재의 복수세율체제에서 단순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 원제도를 간소화해 나가야 함.
 -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없는 지 원세제는 축소 및 폐지하고, 고급 인적자원 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하여 기업 및 개인의 교육투자를 유인할 만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야 할 것임.
 - 지원세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를 단 순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함.

- 기업회계처리기준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접대비와 접대성 경비 등 각종 경비처리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각종 비목의 범위를 회계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복리후생 관련 지출의 경우 수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접대비와 접대성 경비들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적인 측면과 조세행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및 사적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비영리법인 세제 관련, 현재 세목간에 차별화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범위를 일치시키며, 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공익성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체제도 일원화해 나가도록 해야 함.
- 기부금에 대한 차별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영리단체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부금대상단체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단체에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5.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선진화

-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기반을 갖추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체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첫째, 지방세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의 규모만이 확대될 경우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
- 지방정부의 세출 증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소득, 자동차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하여 지방세입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중앙과 지방간 세원 공유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지방정부가 모든 세원에 대하여 독립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지방세 중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과세권이 필요한 세목(독립지방세)과 안정적 세입 확충의 역할을 담당하는 세목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 세원 공유를 추진해야 함.

- 셋째, 지방교부세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지방교부세는 배분방식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고유사무에 대한 지출과 위임사무에 대한 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만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사무와 지출의 상호 관계의 면밀한 분석하에 개편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넷째, 지방양여금을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화하도록 해야 함.
 - 지방양여금은 이론적 근거 없이 주세와 전화세 수입으로 총액을 정하고, 항목간 배분비율도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이 필요함.
 - 지방양여금을 포괄보조금화하고, 지출규모는 공식에 의하여 도출하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처럼 매년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국고보조금은 외부효과와 상관없는 것과 재분배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하여 보조금 용도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사무의 외부효과 및 재분배적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확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사무와 지출 의무를 파악한 뒤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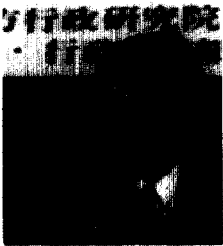
- 여섯째, 국세와 지방세의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경제정책에서 조세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소관부처가 달라 조세정책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에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있음.
 - 조세정책이 국가경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세정의 선진화

- 근거과세와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활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며, 신용카드 결제가 보다 보편화될 수 있도록 카드 결제에 대한 소득세상의 혜택 등 가능한 우대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특례과세제도의 개편에 따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 및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 운영하고, 개편 후의 세부담에 있어서도 향후 3~4년간 경감조치를 운영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개인수표계의 활성화, 신용 카드 및 전자화폐의 활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함.
- 이상과 같이 거래의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면서 세무행정을 한 단계 선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첫째, 추계과세를 지양하고 근거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세정을 개선해 나가야 함.
 - 추계과세가 부득이한 경우 과학적인 추계 모형의 개발을 통해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각종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둘째,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비용 등을 상향 조정해야 함.
 - 무신고·무납부·무기장 및 과소 신고·불성실 기장에 대한 가산세 등의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부과제척기간을 10~15년으로 연장하고,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연한을 국세부과권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해야 함.
- 셋째, 세무조사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여 세무조사는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고유기능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끝으로 납세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정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임.
 -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를 전산매체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세무행정 조직을 납세자 서비스 위주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야 함.

세제개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져야



강용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성실신고를 할수록 불이익을 당하는 세태로 인해 납세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세제 개편은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토론의 요지를 7가지 사항으로 정리하여 보겠다.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IMF 극복을 위하여는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높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기업활동 촉진과 세원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낮추어야 하는 상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조세부담률로 조정해야지 선진국과의 무조건적인 비교는 곤란하며 이에 걸맞는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지 또한 검토해 봐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는 조세가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측면을 더욱 고려할 때이며, 응능원칙에 기반한 재산세 강화나, 직접세 비중의 증대 등이 추진되어야 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반면, 부가가치세 인상은 우선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무조건적인 R&D에 대한 비과세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나 자연과학분야의 R&D 투자에는 적극적인 비과세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채산을 매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한 지출 증대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국세, 지방세 세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한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신시키고, 주민감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섯째,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소득을 노출시키고 이것이 세원 확대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31개의 세목을 단순화하되 특히 부가세(sur tax) 및 기금을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소시켜야 한다.

일곱째, 왜곡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이 전시 세입뿐만 아니라 지출의무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세제를 단순화시켜 납세편의 도모해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M&A와 투자유치업무에 담당하면서 현행 세제에 대해 생각해보던 바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세제가 복잡하고 세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



이진표

슈타트투자은행 한국지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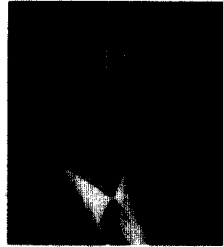
고 있다. 상대적인 경제 수준에 비해 세금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목요연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폭이 적고 외국기업의 조세혜택에 대해 협상을 통한 상대적인 유연성(flexibility)이 부족하다. 세제에 대한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임의적이다.

무엇보다 세제를 단순화시켜 납세자의 편의(user friendly)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조세유인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보다 경쟁력을 갖추었으면 한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적절하게 홍보하고, 미국, 영국 등 국가들과의 확실적인 비교가 아니라 외국인이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를 참고했으면 한다. 또한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면 한다.

세정개혁이 세제개혁보다 우선 되어야

현재의 사회분위기는 마치 IMF체제가 이미 극복된 듯 들떠 있지만, 실제로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물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IMF체제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분석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하고 사태의 전후 과정에 대한 정확한 대차대조표가 나온 이후에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IMF사태가 터지기 불과 몇 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작업을 했지만 위기에 미리 대처하지

는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이러한 이유로 보고서 자체의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책당국이 비전 제시에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다. 부가가치세제상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일치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정치논리에 밀려 계속 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소비세 등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부가가치세의 세수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면세, 감세조치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미 그 폐해가 인정된 만큼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낮추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 여전히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그 주요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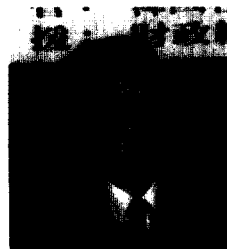
또한 균형재정의 제약요인과 관련하여 세출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입은 형평의 측면에 중

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출과 세입 모두에 동일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지방세에 관한 부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가지는 대의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단,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분담, 기능조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국세행정의 우선적 개혁 없이는 세제 개혁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정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제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긴요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경실련에서 행한 무자료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탈세가 광범위하고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납세자료의 양성화라는 대전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조세체계는 경제 전체의 투명성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세체계의 혼란과 탈루, 탈세 관행을 통한 정경 유착 등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민연금, 의료

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시 자영자 소득 파악에서 드러났듯이 세제의 체계화 부실이 사회 각 영역의 문제로 파급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벌개혁과 유통구조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세개혁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세의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의 확보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특히 고소득층 위주의 특혜적 제도와 세무비리와 탈세의 만연 등은 우리의 조세제도가 기득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세원 확보와 효율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세제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IMF 이후 소득상위 20%계층의 소득은 2.3% 증가하고 세금은 1.8% 감소한 반면 나머지 계층의 세금은 17~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IMF위기 이후 조세의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세제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셋째, 자본이득세 도입, 넷째, 표준소득률 철폐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경위에서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영자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은 조세의 투명성 제고와 형평과세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과세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영자의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의 실제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과 최근 국회에서 호화주택에 대한 중과세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거의 백지화된 것은 유감이다.

진정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소득추계의 과학화를 위해 국세청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재벌의 변칙, 편법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필요하나 이 또한 소득세법 개정시 국회심의과정에서 후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조세가 시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조세정보의 사회적 공유가 빈약함으로써 사회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특히 납세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언급하면서 정보 공개 및 구체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법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분야라는 점을 볼 때 조세입법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와 법률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책효과 측면에서 배분 및 형평성 고려해야

윤영일 / 감사원 감사관

농업사회에서 과학 지식 정보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에 적합한 정책이 도출되기 마련이다. 조세정책의 경우라면 우선 그 정책의 투입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고 집행 산출과정에서는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배분 및 형평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나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된 세제부분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 졌으면 한다. 또한 중장기 비전에서 말하는 타임 스코프(time scope)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도 보다 명확히 밝혔으면 한다.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각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선 강용선 논설위원이 지적한 부분 중 세제 개편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깊이 공감하며 최고 통치자 수준에서도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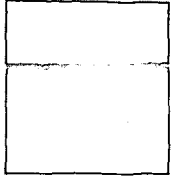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세 부담률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부문에 대한 문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R&D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적에 감사한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을 지적해준 이진표 지점장의 토론내용 중 납세자의 편의(user friendly)를 고려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특히 납세가 의무인 동시에 서비스라는 점을 인식하고 납세자 본인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정보와 자료 전달의 용이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임주영 교수가 지적해준 세출측면의 제약요건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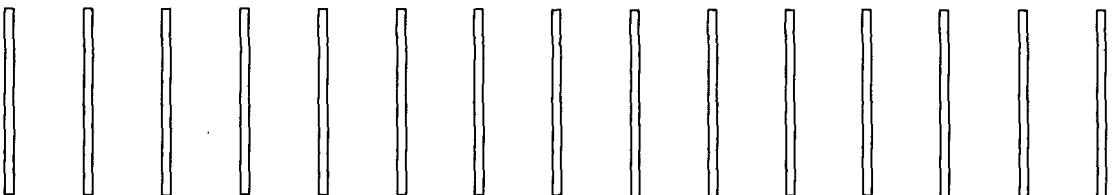
이석연 사무총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서에서도 국민이 조세문제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세부담이 결정되고 절차도 민주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였다.

끝으로 윤영일 감사관이 지적한 타임 스킵의 문제는 초기단계에서 목표설정애 중심을 두고 짧게는 3년 정도의 기간에 추진하고 점진해야 할 사항들 위주로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100~~



정책흐름

1.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
2.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개관
3. 1999년도 제2차 IMF정리협약의 최종결과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에서 1999년 11월 24일에 발표한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의 전문입니다.

□ OECD의 발표 배경

- OECD는 그 동안 국제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의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투자를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인식하에
-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는 조세피난처(Tax Haven)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과도한 조세특혜를 부여하는 각국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를 조사하여 왔음.

- 지난 1999년 11월 15일에서-19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주관하는 OECD 유해조세경쟁회의(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작업내용을 발표하였음.

□ OECD의 주요 발표 내용

- OECD는 1998년에 채택된 유해조세경쟁 보고서(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s(May 1998))에 따라 조세피난처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 전세계 47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조사 작업 및 당국자간 협의를 진행해왔음.

- 지난 1999년 11월 15일에서-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해조세경쟁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사실조사 및 당국자간 협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세피난처 지정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였음.

- 동 기술적 검토결과는 2000년 1월에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에 상정되고 최종 조세피난처 리스트는 2000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공표될 예정임.

- 조세피난처 리스트는 자국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협조적인 조세피난처 지역과 비협조적인 지역을 구분할 것이며 비협조적인 지역에 대하여는 회원국들의 공동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유해조세경쟁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를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는바
- 동 검토결과도 2000년 6월 각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임.
- 회원국의 경우 1998년 유해조세경쟁보고서에 따라 2000년 4월까지 자국의 유해조세제도를 자체검토(self-review)하고 2003년 4월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해야 함.

- 또한, 비회원국도 유해조세경쟁 논의에 합류할 수 있도록 2000년 6월에 비회원국의 각료급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심포지움(High-level Symposium)을 개최할 예정임.

<참고 1>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기준

- ① 소득(금융·서비스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명목적인 조세만 있는 경우(No or only nominal taxes)
-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 엄격한 비밀보호법 또는 행정관행을 통하여 상대국 조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불가능케 함.
- ③ 투명성의 결여(Lack of transparency)
 - 법적·행정적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영
- ④ 실질적 사업수행 조건이 없을 것(No substantial activities)
 -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여 기장센터(booking centres)로서 역할

<참고 2>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 판정기준

- ① 아주 낮거나 쉼인 실효세율
 - 유해조세제도 판명의 제1차적인 기준임.

② Ring fencing

- 특혜적인 조세지원을 받는 자를 비거주자에 한정하거나 국내시장과 격리하여 국내경제는 보호

③ 제도 투명성(transparency)의 결여

-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협상가능한 조세 등을 통해 거주지국의 효과적인 과세 방해

④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 비밀보호법, 행정관행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거주지국의 효과적인 과세 방해

⑤ 기타, 임의적 과세표준의 정의, 이전가격원칙 위반, 협상가능한 조세 등

- * 기준 ①을 충족하고 그 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해조세제도로 판정



개정 한 · 일 조세조약의 개관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에서 1999년 11월 25일에 발표한 「개정조세조약의 개관」의 전문입니다.

1. 개정조세조약의 경위

현행 한일조세조약의 개정을 위하여 제3차에 걸친 조세협상(1996년 4월, 9월, 1998년 6월)을 통하여 1998년 6월 3일 한·일 양국정부는 일본 동경에서 가서명(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 10월 8일 대통령 방일시 일본에서 양국외무장관간에 서명하였고 1999년 8월 1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여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9년 6월 1일 중의원, 1999년 6월 9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1999년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한일 각료 간담회에서 양국 외무부장관간에 발효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99년 11월 22일(동 발효각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따라서 개정 조세조약의 시행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조세는 발효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납세(지급)분부터, 신고납부대상조세는 발효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2. 현행 조세조약 적용시기

1970년 10월 29일 발효된 현행 조세조약은 1999년 11월 21

일자로 종료되거나 현행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조세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된 수입 또는 소득분, 신고납부대상조세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된다.

3. 개정 한 · 일 조세조약 주요내용

건설사업장 ○ 범위 ○ 기간	→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 및 감리용역 → 6월이상	→ 건축·건설·설비공사 및 감리용역 → 6월이상	
종속대리인의 범위 (※종속대리인의 행위는 고정 사업장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	→ 계약체결대리인 주문취득대리인 재고보유대리인	→ 계약체결대리인	→ OECD모델
부동산소득 ○ 과세원칙	→ 규정없음 -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 부동산소재지국과세원칙	→ OECD모델
사업소득 ○ 과세원칙	→ 총괄주의 (국내지점과 관련없는 본사의 국내판매소득도 국내지점의 소득에 합산과세)	→ 귀속주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OECD모델
투수관계기업	→ 대응조정조항 없음	→ 대응조정조항 신설 -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한은 10년으로 한정	- 대응조정조항 : OECD모델
제한세율 ○ 배당 ○ 이자 ○ 사용료	→ 12% → 12% → 12%	→ 25% 이상 지분 소유: 5%, 기타 : 15% → 10% → 10%	→ 2003년 말까지는 5% 대신 10% 적용
이자면세기관 ○ 한국측 ○ 일본측	정부나 중앙은행이 소유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자 지급지국에서 면제한다 는 원칙만 천명	(기관 열거)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 일본은행, 수출입은행	JEXIM+OECF 합병 → JBIC (면세기관 인정)
양도소득 ○ 부동산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 양국과세 → 국내법에 따라 과세	→ 양국과세 → 부동산주식 ¹⁾ 부동산소재지국 과세 → 과점주주주식 ²⁾ 법인소재지국 과세	

주 : 1): 자선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2): 자본율이 25%이상인 과점주주가 총발행주식의 5%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자유직업소득과세	→ 90일 이상 체류시 또는 용역 대가가 \$3,000 이상인 경우 과세	→ 고정시설 보유시 또는 183일 이상 체류시 과세	최근의 국제적 과세기준 적용
연예인 · 체육인	→ 일당 \$100 미만이거나 합계액이 연간 \$3,000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 면세	→ 연간 \$10,000 미만 용역에 대해 면세	
학생 · 연수생	→ 체재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금액 면세허용 - 학생의 경우 \$1,800 미만은 면세 (5년간) - 연수생의 경우 \$5,000 미만은 면세(1년간)	→ 면세점 인상 - 학생의 경우 \$20,000 미만은 면세 (5년간) - 연수생의 경우 \$10,000 미만은 면세(1년간)	
기타소득	→ 규정 없음 -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 조약상 별도조항 규정 - 원칙: 거주지국과세 - 부동산 또는 고정사업장관련 소득은 원천지국과세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과세조정 가능	
이중과세경감조치 ○ 간접납부세액공제 ○ 간주납부세액공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만 허용)	→ 규정없음 → 기간 제한없이 허용	→ (한국측) 지분율 20% 이상인 자회사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 (일본측) 지분율 25% 이상인 자회사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 → 2003년 말까지 허용	지분율에 대해서는 양국이 각각 자국의 법률과 일치하는 비율 채택 개정된 한 · 영 조세조약과 기한 동일

1999년도 제2차 IMF정례협의 최종결과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에서 1999년 11월 30일에 발표한 「1999년도 제2차 IMF정례협의 최종결과」의 주요내용입니다.

- 정부와 IMF는 7월 6일에서 7월 20일 및 11월 11일에서 11월 17일에 걸쳐 1999년도 제2차 정례협의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결과는 12월 중순(잠정)에 IMF 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

거시경제분야 주요합의내용

- 금년도 우리 경제를 경제성장률 8~9%로 상향조정, 물가상승률 1% 미만으로 하향조정, 경상수지 흑자 GDP의 6% 내외로 전망
 - 내년도에는 성장률 5~6%, 물가상승률 3% 내외로 전망
- 저금리 정책, 신축적 환율정책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
 -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적자폭을 줄여나가되 200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함.

금융구조조정분야 주요합의내용

- 1999년 10월 4일 금융시장안정대책대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한 신규투자를 2000년 7월 1일부터 금지

-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forward looking criteria)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은 2년에 걸쳐 분할 적립(금년 50%, 내년 50%)

- 기타 투신·보험사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 등

- 차기 협의는 6개월 이후인 2000년 5~6월경(잠정)에 있을 예정

하반기 IMF 의향서(LOI) 주요내용

I. 개요

- 정책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II. Cover Letter 내용

1. 한국 경제의 성과

-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하고 민주적인 리더십하에 한국 경제는 놀라운 회복을 보이고 있음.
- 1999년에 성장이 급속히 회복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도 증가
- 강한 수출 신장세와 함께 가용 외환보유고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
- SRF를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인도도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

2. 통화 및 재정정책

- 경제회복은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과 재정정책에 힘입은 바 큼.
- 사회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 1999년에는 2차에 걸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금년에 GDP대비 약 4%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회복과 함께 재정수지의 균형회복과정이 2000년 예산부터 시작될 것임.

- 내년도 예산은 이차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의 1~1.5%만큼 감축

3. 금융부문 구조조정

-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금융개혁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제일은행의 매각을 위해 Newbridge Capital과 투자방향서(terms of investment)를 체결하였으며, 서울은행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적 경영진을 물색하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강화되었음.
-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설정(forward looking criteria)은 1999년말까지 이루어질 것임.

4. 투신산업 대책

-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에 보다 큰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투신산업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신산업을 건전화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시급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5. 기업·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노사관계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대우그룹의 해체는 이 면에서 큰 진전임.
- 나머지 5대 재벌은 핵심업종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임.
- 6~64대 재벌의 경우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framework)이 강화되고 있음.
- 노사관계는 보다 안정된 상태이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조정되었으며 정부부문도 축소되어옴.

6. 향후 정책방향

-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경제회복을 확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실업감소의 토대가 되는 구조개혁의 완수에 두어질 것임.
- 이를 위해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를 유지
 -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의 현재화 가능성도 주의해서 관
- 경제회복이 확실해짐에 따라 2000년 예산부터 중기재정의 건전화(medium-term fiscal consolidation) 시작

7. 맺음말

- 금번 협의기간 동안 한국정부와 IMF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반영하여 한국의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 데 동의

-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IM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임.

III. IMF 프로그램 주요내용

1. 1999년 및 2000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 IMF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지난 1월 협의시에 합의한 1999년중 2%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금년중 8~9%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 또한 내년도에도 여전히 5~6%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물가
 -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압력은 미미하여 금년도에 1%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전망
 - 지난 1월 협의시의 3% 전망치를 하향조정
 - 내년도에는 3%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한다고 전망
-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금년도에 GDP의 6% 내외의 흑자를 보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지속한다고 전망

금번합의			
1999년	8~9%	1%미만	GDP의 6%내외
2000년	5~6%	3%내외	1999년보다 감소하지만 여전히 흑자
1999년 7월 잠정합의			
1999년	6~7%	2%미만	200억달러 내외
2000년	5~6%	3%미만	1999년보다 감소하지만 여전히 흑자
1999년 1월 합의			
1999년 전망치	2%	3%내외	상당한 규모의 흑자지속

2. 거시경제 정책방향

- 금리정책: 1999년 7월 잠정합의시와 동일
- IMF측은 그동안의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저금리 정책이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봄.
- 향후에 경기회복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를 다루기 위해 통화정책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is envisaged that the present low interest rate policy will be maintained for the time being. Looking ahead, monetary policy may need to be adjusted to address possible inflationary pressures as the degree of slack in the economy is reduced"

- 외환정책: 1999년 7월 잠정합의시와 동일

- 환율정책은 신중적으로 운용한다는 지난번 합의문안을 유지

- 외환시장 개입은 가용외환보유고가 확충되도록 하면서 smoothing operation에 한한다고 표현

"Exchange rate policy will remain flexible. BOK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consistent with a further build-up in usable reserves"

- 재정정책: 1999년 7월 잠정합의시와 동일

- 1999년도 재정적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당초 계획인 GDP 5%(1차 추경을 감안하면 GDP의 5.2%)에서 4% 내외로 축소를 목표

"The deficit target for 1999 is now around 4 percent of GDP"

- 2000년 재정정책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회복을 감안하여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목표를 GDP의 3.5%로 함.

"With the economic recovery under way, the primary focus of fiscal policy in 2000 will shift towards a process of medium-term fiscal consolidation.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targeted a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deficit of 3.5 percent of GDP"

- 균형재정은 당초 계획인 2006년보다 앞당겨진 2004년에 달성

- 세계개혁: 1999년 7월 잠정합의시와 동일
- 소득재분배와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체계 간소화 및 징세행정 강화 등의 세계개편 기본방향에 합의
 - 조세행정 강화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 제고
 - 직·간접세의 조세감면 축소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정비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경감
 - 양도소득세를 정부 부과제에서 자진신고납부제로 전환
 - 국세청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등

- 정부보유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 발표시한을 지난 협의 시 합의한 1999년 6월 말에서 2000년 3월 말로 연기
- 금감위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을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새로운 기준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은 2년에 걸쳐 분할적립(금년 50%, 내년 50%)

3. 금융구조조정분야 주요 협의내용

- ◇ 투신·생보사의 건전성 강화방안을 집중협의
- ◇ 은행부문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기합의사항 이행에 중점

가. 은행부문

- 제일·서울은행의 조속한 매각원칙 합의
- 제일은행은 Newbridge Capital과 체결한 투자의향서 (terms of investment)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계약으로 전환하고 거래를 완결
- 서울은행은 1999년말까지 국제적 경영진을 영입하여 민영화를 준비하도록 하며 정부는 국제적 경영진 물색과 더불어 새 원매자 또는 전략적 파트너를 물색

나. 투신사 구조조정

- 2000년 7월 1일부터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 금감위는 모든 투신(운용)사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여 투신(운용)사가 적정자본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치
- 한투, 대투의 정부현물출자에 따른 정부지분의 민간매각계획을 2000년 6월 말까지 준비
- 기타 주요 건전성 강화방안
- 2000년 4월 1일까지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과 준법감시인을 임명
- 2000년 4월 1일부터 투신(운용)사와 계열사간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 강화

- 2000년 4월 1일부터 투신(운용)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매년 수행하며 재무제표를 투자자에 공개
- 1999년부터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펀드간 자전거래금지

다. 생보사 구조조정

- 금감위는 7개 부실생보사의 정리 완료를 위해 노력
- 금감위는 생보사의 비약관 대출(lending to nonpolicy holders) 한도를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
- 금감위는 보험계리인, 외부감사인,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1999년 12월)
- 기타 주요 건전성 강화방안
- 1999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신EU 방식에 의한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충족시 적기시정조치(경영정상화계획을 기제출한 생보사는 2000년 12월 31일부터)
- 보험사의 주식투자는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 2000년 4월 1일부터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한도(자산의 15% 이하) 및 단일자산 취득한도(5%) 설정

라. 기타 주요 금융구조조정분야 협의내용

-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충분히 확보

-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공간 채권발행한도 조정후 정부는 두기관이 부실채권매각, 채권발행등을 통하여 충분히 자금을 확보하도록 함.

- 계열사와 주주간 거래에 대한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법규를 다음의 원칙에 의거 검토(1999년 12년 말)

- 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시장원리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 회사고유 펀드와 고객 펀드간의 거래를 금지
- 계열사간 또는 기관과 주주간 금융거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에 한정하여 시장가격으로 거래
- 모든 관련 당사자간 거래는 재무제표에 공시되고 금감위, 주주 및 펀드의 수익자에게 보고되어야 함.

IV. WB와의 기업구조조정 분야 주요 합의내용

1. 5대재벌 구조조정

-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불만족스러운 경우 수정 제출·재무구조 개선약정의 이행 여부에 대해 월별 평가 실시
-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다음의 정보를 세계은행 제출
- 부채 현황, 신규여신 및 만기연장 상세내역

○ 금감위가 시중은행에 시달한 대우여신 관련 총당금 적립지침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 작성

○ 구조조정 방법에 따라 계열사를 분류

○ 계열사 분리 방안

○ 합의된 구조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지원 제공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우계열사 Workout 계획 작성

○ 실사, 국제전문가의 참여, 이행지표, 이행점검, 마이행시 제재

□ 9월말, 12월말 점검결과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 이행시, 외부전문가의 참여하에 구조조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제재방안 수립

□ Big Deal 관련, 외부전문가의 참여하에 다음의 조치를 이행

○ 계획된 합병의 실행 가능성 평가, 피합병기업에 대한 실사, 합병후 예상 자본구조, 과도한 부채 및 생산시설의 해소방안 수립

2. 6~64대 기업 Workout

□ Workout MOU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마이행기업에 대한 제재방안 수립(2차 Workout, 여신회수, 파산신청 등)

□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00년 12월까지 연장

3. 부채의 출자전환

□ D/E swap을 통해 취득한 지분의 처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도록 금감위가 채권은행에 권고(매각 또는 기업구조조정기구에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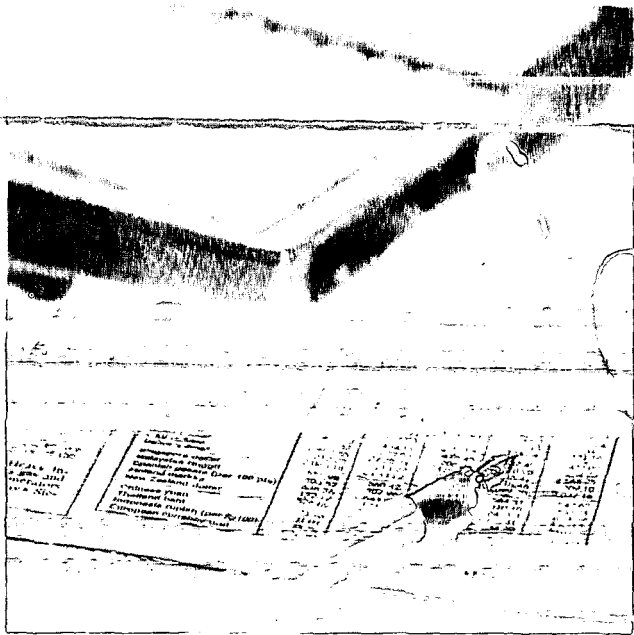
□ 기업구조조정기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설립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장애요인 제거방안 수립

4. 기타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호지급보증을 해소

□ 역의활동을 포함한 재벌의 결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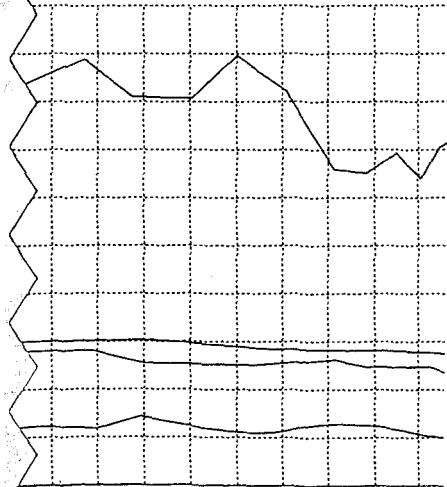
□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6~64대기업의 Workout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세제은행에 자료를 제출



재정 통계

○○○○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표 1〉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단위: 백만원)

연도	성질별	합계	서울	광역시·도 계	광역시 계	부산	대구	인천
1990	합계	16,166,280	3,248,365	12,917,914	3,256,809	960,157	759,476	545,514
	인건비	2,245,278	463,115	1,782,163	397,078	146,316	92,625	61,132
	물건비	1,899,705	363,438	1,536,267	370,587	136,283	77,030	69,386
	경상이전	1,266,086	160,502	1,105,583	251,592	58,743	33,377	35,567
	자본지출	9,191,808	1,712,305	7,479,503	1,889,752	536,353	459,718	346,913
	융자 및 출자	496,238	196,195	300,044	98,825	16,842	23,509	9,421
	보전재원	460,909	56,470	404,439	129,629	40,126	34,612	11,019
	내부거래	369,449	265,690	103,759	76,601	12,022	31,151	5,449
기타	236,807	30,651	206,157	42,745	13,471	7,453	6,628	
1991	합계	21,850,183	4,448,961	17,401,221	4,153,413	1,301,419	882,298	683,420
	인건비	2,754,319	582,113	2,172,206	489,091	176,201	113,510	76,276
	물건비	2,413,158	350,814	2,062,344	491,932	183,107	103,734	86,144
	경상이전	1,371,611	195,950	1,175,661	285,457	93,843	52,277	44,372
	자본지출	13,190,510	2,663,042	10,527,469	2,331,094	675,157	502,101	417,906
	융자 및 출자	626,297	344,471	281,826	111,743	53,095	32,819	7,127
	보전재원	881,796	157,893	723,902	241,344	33,737	38,967	14,641
	내부거래	329,265	124,176	205,089	156,618	70,932	29,655	28,108
기타	283,226	30,502	252,724	46,134	15,346	9,236	8,847	
1992	합계	26,660,109	5,819,606	20,840,503	5,420,231	1,975,937	1,084,714	916,394
	인건비	3,280,681	693,864	2,586,817	586,081	202,993	132,714	94,581
	물건비	3,191,713	509,749	2,681,964	626,351	222,967	137,994	110,362
	경상이전	1,919,009	491,991	1,427,018	361,665	137,867	64,818	63,506
	자본지출	15,424,433	3,071,301	12,353,132	3,342,824	1,230,524	651,609	592,571
	융자 및 출자	721,514	391,313	330,201	126,918	43,124	41,792	6,750
	보전재원	1,138,081	137,290	1,000,791	188,464	43,062	47,755	6,374
	내부거래	429,653	227,530	202,123	142,025	81,338	714	32,988
기타	555,025	296,568	258,457	45,903	14,062	7,318	9,262	
1993	합계	28,874,545	6,309,766	22,564,779	5,839,250	2,032,130	1,131,815	1,189,188
	인건비	3,791,439	791,072	3,000,367	682,281	232,096	154,339	113,622
	물건비	3,406,202	564,758	2,841,444	669,915	242,610	126,736	129,333
	경상이전	2,310,125	385,902	1,924,223	489,274	183,617	83,336	97,117
	자본지출	16,118,051	3,099,580	13,018,471	3,519,443	1,162,374	679,936	793,291
	융자 및 출자	676,499	239,129	437,370	67,627	36,269	4,061	3,237
	보전재원	993,190	148,438	844,752	172,315	66,785	44,804	10,267
	내부거래	1,239,841	983,302	256,539	190,148	95,900	30,831	31,791
기타	339,198	97,585	241,613	48,247	12,479	7,772	10,530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성질별	합계	서울	광역시·도 계	광역시 계	부산	대구	인천
1994	합계	32,536,378	6,668,548	25,867,830	6,691,975	2,238,251	1,805,839	1,092,799
	인건비	4,291,627	867,133	3,424,494	773,940	259,978	174,352	136,258
	물건비	3,638,562	663,144	2,975,418	671,434	221,027	145,041	140,772
	경상이전	3,343,094	432,747	2,910,347	777,216	277,585	139,243	134,745
	자본지출	17,542,871	3,320,762	14,222,109	3,746,088	1,205,417	1,207,663	602,736
	융자 및 출자	712,046	186,180	525,866	137,695	74,259	3,166	8,236
	보전재원	1,495,376	86,162	1,409,214	282,102	70,390	73,812	14,257
	내부거래	1,435,562	1,077,778	357,784	296,102	128,879	60,977	53,739
예비비 및 기타	77,240	34,642	42,598	7,398	716	1,585	2,056	
1995	합계	36,664,283	6,659,918	30,004,365	7,814,372	2,562,708	1,855,900	1,477,617
	인건비	4,759,859	944,070	3,815,789	909,456	293,276	208,337	180,189
	물건비	4,507,873	870,046	3,637,827	880,707	280,391	193,801	194,009
	이전경비	4,158,593	817,588	3,341,005	1,027,399	373,844	229,191	189,721
	자본지출	20,418,226	3,387,430	17,030,796	4,298,783	1,453,875	1,044,012	793,829
	융자 및 출자	599,375	159,754	439,621	51,492	10,088	8,763	24,930
	보전재원	1,506,002	99,820	1,406,182	421,370	105,466	108,650	39,882
	내부거래	658,309	381,210	277,099	214,271	45,042	60,855	51,044
예비비 및 기타	56,046	-	56,046	10,894	726	2,291	4,013	
1996	합계	44,444,694	8,357,394	36,087,300	9,348,556	3,202,976	2,080,550	1,915,883
	인건비	5,314,514	1,048,577	4,265,937	1,024,480	332,774	230,682	205,492
	물건비	5,371,388	958,506	4,412,882	1,037,309	320,313	228,699	232,456
	이전경비	5,292,322	1,117,470	4,174,852	1,277,818	463,822	253,651	265,902
	자본지출	24,064,218	3,861,282	20,202,936	4,904,349	1,713,695	1,069,213	1,039,025
	융자 및 출자	970,179	253,514	716,665	125,259	20,095	46,226	10,074
	보전재원	1,856,303	369,795	1,486,508	457,529	103,603	155,338	64,000
	내부거래	1,329,091	714,864	614,227	460,436	218,468	91,788	74,626
예비비 및 기타	246,679	33,386	213,293	61,376	30,206	4,953	24,308	
1997	합계	50,958,970	9,295,720	41,663,250	11,148,277	3,458,885	2,478,202	2,099,208
	인건비	5,916,763	1,137,535	4,779,228	1,217,383	367,454	252,063	230,158
	물건비	6,037,429	1,106,732	4,930,697	1,309,747	387,768	262,865	271,188
	이전경비	6,319,215	1,467,669	4,851,546	1,466,369	494,370	283,507	282,397
	자본지출	28,101,971	4,370,161	23,731,810	5,975,604	1,808,157	1,368,955	1,138,009
	융자 및 출자	1,054,624	332,479	722,145	148,475	11,522	90,014	16,526
	보전재원	1,641,741	35,958	1,605,783	465,382	105,367	123,667	74,517
	내부거래	1,598,648	825,038	773,610	482,656	223,415	89,639	78,987
예비비 및 기타	288,579	20,148	268,431	82,661	60,832	7,492	7,426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성질별	광주	대전	울산	도 계	경기	강원	충북
1990	합계	466,304	525,359	-	9,661,105	2,209,349	851,064	610,192
	인건비	49,909	47,097	-	1,385,084	265,337	131,510	98,538
	물건비	40,726	47,162	-	1,165,680	237,575	104,295	79,319
	경상이전	90,785	33,120	-	853,991	172,973	58,265	42,409
	자본지출	203,720	343,048	-	5,589,751	1,343,382	503,379	352,945
	융자 및 출자	30,679	18,373	-	201,219	108,714	11,118	6,486
	보전재원	28,076	15,795	-	274,811	46,424	27,309	18,413
	내부거래	15,486	12,494	-	27,157	5,150	274	1,142
	예비비 및 기타	6,924	8,270	-	163,412	29,793	14,915	10,940
1991	합계	716,835	569,441	-	13,247,808	3,234,106	1,153,711	779,731
	인건비	62,676	60,429	-	1,683,116	329,528	160,761	118,062
	물건비	62,163	56,784	-	1,570,411	321,489	137,203	100,860
	경상이전	56,434	38,531	-	890,204	167,290	67,147	79,597
	자본지출	403,517	332,414	-	8,196,375	2,194,634	708,298	446,930
	융자 및 출자	17,291	1,411	-	170,083	41,944	12,640	5,018
	보전재원	94,077	59,923	-	482,558	130,410	45,324	12,147
	내부거래	14,153	13,770	-	48,471	6,117	1,214	4,577
	예비비 및 기타	6,525	6,180	-	206,590	42,694	21,124	12,541
1992	합계	734,601	708,585	-	15,420,272	3,782,527	1,237,532	1,013,025
	인건비	79,426	76,367	-	2,000,736	398,031	190,315	141,993
	물건비	80,469	74,559	-	2,055,613	422,618	177,374	130,313
	경상이전	51,620	43,854	-	1,065,353	201,364	83,960	75,061
	자본지출	425,081	443,039	-	9,010,308	2,377,773	715,836	567,744
	융자 및 출자	24,648	10,604	-	203,283	29,403	10,704	7,072
	보전재원	52,862	38,411	-	812,327	296,204	34,914	57,708
	내부거래	12,856	14,129	-	60,098	17,152	7,773	1,701
	예비비 및 기타	7,639	7,622	-	212,554	39,982	16,656	31,433
1993	합계	750,642	735,475	-	16,725,529	4,034,326	1,381,960	1,095,215
	인건비	91,740	90,484	-	2,318,086	471,989	218,437	163,709
	물건비	88,552	82,684	-	2,171,529	482,187	189,809	128,843
	경상이전	72,237	52,967	-	1,434,949	367,282	116,627	83,621
	자본지출	418,376	465,466	-	9,499,028	2,467,835	745,385	635,362
	융자 및 출자	17,594	6,466	-	369,743	30,758	45,614	29,417
	보전재원	40,972	9,487	-	672,437	161,122	44,587	37,859
	내부거래	13,058	18,568	-	66,391	6,915	5,379	2,500
	예비비 및 기타	8,113	9,353	-	193,366	46,238	16,122	13,904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성질별	광주	대전	울산	도 계	경기	강원	총계
1994	합계	685,539	869,547	-	19,175,855	4,554,481	1,518,207	1,079,666
	인건비	101,709	101,643	-	2,650,554	546,009	249,273	186,895
	물건비	76,828	87,766	-	2,303,984	473,373	191,056	141,359
	경상이전	131,545	94,098	-	2,133,131	682,070	157,977	113,759
	자본지출	298,065	432,207	-	10,476,021	2,517,477	836,197	582,940
	융자 및 출자	6,884	45,150	-	388,171	24,801	14,599	13,209
	보전재원	47,671	75,972	-	1,127,112	289,116	54,431	35,748
	내부거래	20,442	32,065	-	61,682	11,940	10,193	1,341
	예비비 및 기타	2,395	646	-	35,200	9,695	4,481	4,415
1995	합계	942,531	975,616	-	22,189,993	5,334,353	1,743,036	1,435,896
	인건비	113,522	114,132	-	2,906,333	595,020	276,088	207,154
	물건비	101,431	111,075	-	2,757,120	608,763	229,616	177,579
	이전경비	126,793	107,850	-	2,313,606	641,987	151,795	124,016
	자본지출	468,307	538,760	-	12,732,013	3,070,413	982,450	869,699
	융자 및 출자	1,338	6,373	-	388,129	35,996	23,214	14,785
	보전재원	104,060	63,312	-	984,812	351,976	70,222	33,719
	내부거래	23,745	33,585	-	62,828	22,270	5,365	1,556
	예비비 및 기타	3,335	529	-	45,152	7,928	4,286	7,388
1996	합계	1,184,000	965,147	-	26,738,744	6,673,946	2,176,463	1,743,777
	인건비	127,805	127,727	-	3,241,457	688,199	304,642	230,071
	물건비	119,261	136,580	-	3,375,573	768,422	288,087	217,629
	이전경비	168,704	125,739	-	2,897,034	778,775	239,843	170,519
	자본지출	627,610	454,806	-	15,298,587	4,001,494	1,197,854	992,837
	융자 및 출자	28,883	19,981	-	591,406	99,417	52,189	58,195
	보전재원	76,741	57,847	-	1,028,979	254,113	78,603	65,960
	내부거래	33,332	42,222	-	153,791	64,897	12,802	5,322
	예비비 및 기타	1,664	245	-	151,917	18,629	2,443	3,244
1997	합계	1,350,210	1,069,678	692,094	30,514,973	8,094,992	2,681,896	1,853,529
	인건비	139,100	142,164	86,444	3,561,845	778,715	342,580	256,743
	물건비	135,266	152,432	100,228	3,620,950	847,258	319,043	234,209
	이전경비	194,417	145,812	65,866	3,385,177	949,298	262,453	180,260
	자본지출	744,909	522,656	392,918	17,756,206	4,778,242	1,611,712	1,092,363
	융자 및 출자	19,242	9,797	1,374	573,670	180,490	42,410	21,629
	보전재원	71,601	48,363	41,867	1,140,401	341,136	72,863	51,966
	내부거래	40,852	46,516	3,247	290,954	134,383	15,548	9,518
	예비비 및 기타	4,823	1,938	150	185,770	85,470	15,287	6,841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성질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합계	850,906	810,070	1,232,957	1,172,458	1,720,208	203,901
	인건비	124,433	140,174	171,870	208,959	206,893	37,370
	물건비	99,343	111,140	146,182	157,271	202,916	27,639
	경상이전	61,928	74,249	85,768	85,131	255,625	17,644
	자본지출	510,101	424,346	738,725	637,234	969,041	110,600
	융자 및 출자	9,147	12,288	26,304	15,322	9,714	2,125
	보전재원	29,713	31,081	40,155	37,186	40,456	4,074
	내부거래	359	731	2,623	7,511	9,042	325
	예비비 및 기타	15,881	16,061	21,332	23,846	26,521	4,124
1991	합계	1,171,913	1,251,944	1,619,698	1,621,496	2,130,623	284,586
	인건비	149,758	167,267	207,103	253,932	251,272	45,433
	물건비	140,450	145,133	199,340	218,970	271,284	35,682
	경상이전	82,827	101,224	129,307	114,618	123,680	24,514
	자본지출	729,035	729,122	978,114	924,094	1,329,552	156,595
	융자 및 출자	7,598	47,232	14,602	21,007	10,762	9,281
	보전재원	41,692	40,183	59,113	51,951	97,167	4,570
	내부거래	2,469	1,082	8,424	8,787	12,860	2,942
	예비비 및 기타	18,083	20,701	23,695	28,137	34,046	5,570
1992	합계	1,318,452	1,403,339	1,733,048	2,081,664	2,455,227	395,458
	인건비	180,103	198,836	245,843	296,470	294,268	54,877
	물건비	188,630	192,167	250,139	280,522	364,898	48,952
	경상이전	96,907	122,429	154,970	135,957	162,113	32,592
	자본지출	781,850	762,787	958,829	1,232,191	1,376,370	236,928
	융자 및 출자	17,410	55,087	13,128	46,874	10,818	12,787
	보전재원	34,081	53,493	81,484	47,882	203,407	3,154
	내부거래	1,774	951	5,019	14,434	10,655	639
	예비비 및 기타	17,697	17,589	23,636	27,334	32,698	5,529
1993	합계	1,567,140	1,525,748	1,812,675	2,115,158	2,744,425	448,882
	인건비	207,797	230,981	282,887	339,012	339,903	63,371
	물건비	196,001	216,215	261,574	304,291	341,279	51,330
	경상이전	132,104	174,495	168,571	172,312	182,258	37,679
	자본지출	919,911	802,697	953,675	1,187,401	1,522,118	264,644
	융자 및 출자	10,215	19,417	30,839	37,623	147,744	18,116
	보전재원	71,900	66,450	66,414	45,905	171,404	6,796
	내부거래	14,030	1,307	25,257	3,153	6,358	1,492
	예비비 및 기타	15,182	14,186	23,458	25,461	33,361	5,454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성질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4	합계	1,736,086	1,814,888	2,101,886	2,581,311	3,289,970	499,360
	인건비	238,793	263,176	321,234	387,777	385,113	72,284
	물건비	204,999	224,915	294,367	347,098	361,766	65,051
	경상이전	171,117	210,813	228,529	232,365	285,776	50,725
	자본지출	1,028,955	987,290	1,129,804	1,391,571	1,738,232	263,555
	융자 및 출자	14,755	13,281	40,476	58,164	190,828	18,058
	보전재원	66,134	110,423	80,950	156,716	307,083	26,511
	내부거래	10,419	1,852	2,746	3,814	17,451	1,926
예비비 및 기타	914	3,138	3,780	3,806	3,721	1,250	
1995	합계	2,020,323	2,164,947	2,564,314	2,792,882	3,555,797	578,967
	인건비	263,910	289,744	352,799	416,890	420,619	84,109
	물건비	251,948	261,711	327,539	394,666	429,195	76,103
	이전경비	203,483	234,472	268,476	251,330	374,933	63,114
	자본지출	1,166,364	1,276,249	1,398,970	1,537,648	2,117,670	313,072
	융자 및 출자	38,287	19,888	76,773	102,847	53,117	23,222
	보전재원	79,298	80,791	127,590	79,838	146,254	15,124
	내부거래	10,605	1,612	8,498	3,829	5,751	3,342
예비비 및 기타	6,428	480	3,669	5,834	8,258	881	
1996	합계	2,572,878	2,625,554	3,060,907	3,234,156	3,934,201	716,862
	인건비	291,096	317,251	389,493	460,011	465,518	95,176
	물건비	294,521	324,201	402,776	483,882	502,946	93,109
	이전경비	269,966	278,606	319,591	309,563	440,775	89,396
	자본지출	1,516,692	1,473,463	1,760,053	1,822,046	2,162,413	371,735
	융자 및 출자	27,771	74,523	71,480	62,186	102,353	43,292
	보전재원	138,748	77,024	83,277	73,917	238,385	18,952
	내부거래	28,094	2,245	13,099	12,715	10,254	4,363
예비비 및 기타	5,990	78,241	21,138	9,836	11,557	839	
1997	합계	2,751,956	2,998,571	3,559,395	3,689,625	3,981,097	903,912
	인건비	328,925	353,136	439,596	516,854	437,523	107,773
	물건비	319,923	334,889	451,070	536,018	471,847	106,693
	이전경비	292,739	354,888	358,281	402,048	470,950	114,260
	자본지출	1,572,109	1,770,924	2,066,843	2,053,562	2,295,166	515,285
	융자 및 출자	50,989	31,844	72,198	43,723	100,055	30,332
	보전재원	147,487	128,317	117,443	100,399	157,575	23,215
	내부거래	32,142	12,759	49,176	14,149	16,929	6,350
예비비 및 기타	7,642	11,814	4,788	22,872	31,052	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행정자치부